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349-10

202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권인혜 | 전문연구원 | 연구 총괄

나현수 | 연구원 | 이행실태 분석

손경민 | 연구원 | 이행실태 분석

이진 | 연구원 | 자료수집

오한솔 | 연구원 | 자료수집

연구보고 E20-2023-2

202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3.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요

- 1. 제도 도입 배경 1
- 2. 제도 연혁 3

제2장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구성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

- 1. 항목 구성 7
- 2. 점검 방법 및 자료 18

제3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1. 주요 점검 결과 23
- 2. 세부 점검 결과 26

제4장 요약 및 향후 계획

- 1. 이행실태 점검 결과 요약 89
- 2. 향후 계획 94

부록

- 1. 2023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시·군) 97
- 2. 2023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부처 간 협조자료 요청목록 101
- 3. 2023년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103

- 참고문헌 115**

표 차례

제1장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연혁	5
〈표 1-2〉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업무 추진(2011~2023년)	6

제2장

〈표 2-1〉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기초인프라의 국가 최저기준 비교	8
〈표 2-2〉 기본계획 시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9
〈표 2-3〉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전망	14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국가최소기준 및 목표치	16
〈표 2-5〉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및 자료	18
〈표 2-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구축 현황	20

제3장

〈표 3-1〉 2023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목표치 달성 항목 현황	23
〈표 3-2〉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24
〈표 3-3〉 진료 항목의 지역별·진료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27
〈표 3-4〉 진료 항목의 지역별·진료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28
〈표 3-5〉 진료 항목의 동·읍·면부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29
〈표 3-6〉 진료 항목의 동·읍·면부 진료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29
〈표 3-7〉 진료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30
〈표 3-8〉 응급의료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33
〈표 3-9〉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36
〈표 3-10〉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36
〈표 3-11〉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37
〈표 3-12〉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37

〈표 3-13〉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37
〈표 3-14〉 노인복지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40
〈표 3-15〉 초·중등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43
〈표 3-16〉 초·중등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44
〈표 3-17〉 초·중등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44
〈표 3-18〉 초·중등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45
〈표 3-19〉 초·중등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45
〈표 3-20〉 평생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48
〈표 3-21〉 문화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51
〈표 3-22〉 문화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52
〈표 3-23〉 문화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52
〈표 3-24〉 도서관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55
〈표 3-25〉 도서관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55
〈표 3-26〉 도서관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56
〈표 3-27〉 체육시설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59
〈표 3-28〉 체육시설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59
〈표 3-29〉 체육시설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59
〈표 3-30〉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철거 사업 실적	62
〈표 3-31〉 상수도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63
〈표 3-32〉 하수도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65
〈표 3-33〉 난방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68
〈표 3-34〉 대중교통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71

〈표 3-35〉 대중교통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72
〈표 3-36〉 생활폐기물(세부: 영농폐기물)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75
〈표 3-37〉 생활폐기물(세부: 생활폐기물)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75
〈표 3-38〉 방법설비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78
〈표 3-39〉 경찰순찰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81
〈표 3-40〉 소방출동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84
〈표 3-41〉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87

제4장

〈표 4-1〉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현황(2020~2023년)	92
--	----

제2장

〈그림 2-1〉 산부인과 항목 접근성 및 주민 거주지 비율 측정(사례: 경상남도 거창군) ... 12

제3장

〈그림 3-1〉 진료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31

〈그림 3-2〉 응급의료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34

〈그림 3-3〉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38

〈그림 3-4〉 노인복지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41

〈그림 3-5〉 초·중등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46

〈그림 3-6〉 평생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49

〈그림 3-7〉 문화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53

〈그림 3-8〉 도서관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57

〈그림 3-9〉 체육시설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60

〈그림 3-10〉 상수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64

〈그림 3-11〉 하수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66

〈그림 3-12〉 난방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69

〈그림 3-13〉 대중교통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73

〈그림 3-14〉 생활폐기물 항목(영농폐기물)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76

〈그림 3-15〉 생활폐기물 항목(생활폐기물)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77

〈그림 3-16〉 방법설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79

〈그림 3-17〉 경찰순찰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82

〈그림 3-18〉 소방출동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85

〈그림 3-19〉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88

1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요

1. 제도 도입 배경

- 농어촌과 도시 간 생활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법」)을 제정 및 공포함.
 -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사업을 추진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의 교육 및 문화예술 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되는 종합계획으로, 다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계획임.

- 정부의 삶의 질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제2차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하면서 농어촌 공공·민간서비스에 대한 공급기준을 설정함.

- 농어촌의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의 공급 실태 및 주민 수요 분석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기틀을 마련함(송미령 외 2009, 송미령 외 2009, 김광선 외 2010).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독일의 '전 국토에 대한 등가치적 생활 조건 확립' 등 농어촌지역 공공서비스 공급기준과 관련한 해외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도입함.

참고: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¹⁾

- 1985년 발생한 광우병이 영국을 휩쓸면서 영국의 농촌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쇠퇴에 직면함.
- 이후 영국 정부는 광우병 이외에도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 문제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함.
- 농촌의 양극화, 사회적 배제, 지역서비스 공급 부족, 일자리 부족, 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모든 부처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함.
- 그 결과, 영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구축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를 발간하고 농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함.
- 특히 「농촌백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농촌발전의 비전과 관련하여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농어촌서비스기준'(Rural Services Standard)을 공표함.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을 의미함.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간소화됨. 즉 2000년 처음 발표된 것은 14개 부문 35개 기준이었지만, 2004년에는 11개 부문 35개 기준, 그리고 2006년에는 8개 부문 13개 항목으로 간소화됨(① 교육 및 아동 서비스, ② 광대역 통신망(학교), ③ 사회적 돌봄, ④ 우체국 서비스, ⑤ 보건, ⑥ 인터넷 접속, ⑦ 긴급서비스(구급·소방·경찰), ⑧ 교통).
- 영국은 2007년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중단하고, 기준 설정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함. 그 이유는 첫째, 국가 최소 수준 측면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임. 둘째, 농어촌 지역의 다양성 및 지역 간 상이한 여건과 차별성으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공통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더 이상 운용하는 데 한계가 따랐기 때문임.

1)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제도 연혁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정부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신규 도입한 제도임.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을 설정한 것임.
 - 8개 부문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초안으로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및 국회 토론회, 관련 부처 실무자 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2009년 말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함.
 - 2010년 7월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인삶의질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위원회가 평가 및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계획에서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장려함.

- 제도 도입 당시 각 항목의 목표치는 구득 가능한 최신 현황 및 통계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해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함.
 - 주요 서비스 인프라의 과부족 분석 결과와 관련 통계 및 부처별 성과지표 등을 반영하고, 설문조사 및 현장 인터뷰,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목표치를 설정함.
 - 목표치(안)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여 확정함.

-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달성 정도를 지속해서 점검 및 평가하고 있으며, 항목 보완과 제도 개편도 지속 추진함.
 - 제2차 기본계획 시기인 2011년에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시작하였고, 2013년 '안전' 부문과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함.

- 제3차 기본계획(2015-2019) 수립 시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관 협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체계 변화가 추구됨에 따라 제도가 개편됨.
 -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기조하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 강화 및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함.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자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7개 부문 17개 '핵심항목'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선택항목'으로 이원화함.
 - 계획 수용성과 현장 적합성, 달성 가능성, 주민 수요 조사 및 전문가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핵심항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하고 목표치도 보다 현실화하여 재설정함.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2017년 이행실태 점검이 어려운 주택, 경찰순찰 항목에 대한 점검 방법의 개선 및 목표치 재설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 농어업인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를 개최함.
 - 2018년 전문지원기관에서 주택 항목의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문지원기관과 충남연구원이 공동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 체계 개선 연구'를 수행함.

- 제4차 기본계획(2020-2024) 수립 시기에 맞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2020년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정부의 국가적 생활SOC 확대 기조를 반영하여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진료, 영유아 보육·교육, 도서관, 초·중등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접근성 측정방식을 적용함.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연혁

구분	주요 연혁	개편(도입) 배경
제2차 기본계획 (‘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2010년)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 제고 * 농어촌서비스 기준(영국, 전 국토의 등가치적 생활 조건 확립(독일) 등 외국의 정책 사례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부문과 경찰순찰 항목 추가(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강력 범죄 발생 증가 배경(2009년 대비 2011년 40% 증가)
제3차 기본계획 (‘1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지자체 기준을 이원화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지자체, 민-관 등 협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체계 변화 추구
제4차 기본계획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폐기물 등 생활SOC 관련 항목 신설 • 일부 항목에 대해 서비스 접근성 방식의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SOC 확충 기초 반영 • 서비스 이용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접근성 방식 도입 필요성

참고: 「농어업인삶의질법」의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주요 내용

- **제3조 제6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의**
 -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 **제5조 제1항 제10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① 정부는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 **제8조 제1·2항: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① 정부는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2조 제2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 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제1항~제5항: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 ① 정부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2〉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업무 추진(2011~2023년)

연도	연차별 공통업무	연차별 특별업무
2011	(1) 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② 핵심 이행지수	(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질향상계획 반영 실태 분석 ① 기본계획 분석 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 ③ 시·도계획(충남), 시·군 계획(화천군·장흥군) 심층분석 (2) 사례지역 심층조사 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 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 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
2012		(1)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 (2)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가능성 조사 ②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 (3)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 '총괄팀'의 별도 자료집 발간
2013	(1) 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1)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문화 부문 심층연구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문가 평가 조사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조사 (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방향 제시
2014	(1) 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1)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① 개편안의 핵심항목 및 선택항목 구성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 방안
2015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9개 시·도 연구원 (2) 주요 업무: 선택항목 제정 및 이행실태 점검·분석
2016 ~ 2018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7개 시·도 연구원('16~'17) 8개 시·도 연구원('18) (2) 주요 업무: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분석
2019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제4차 기본계획을 반영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8개 시·도 연구원('19) (2) 주요 업무: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분석
2020 ~ 2023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이행 부진 항목 및 취약 지역 관련 연구 (2) 주요 업무: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농어업인 삶의질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21)

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구성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

1. 항목 구성

1.1. 제4차 기본계획 및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항목 개편

- 제4차 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의 방향인 ‘농어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농 간 격차 해소’에서 ‘지역·정책 대상별 수요에 맞춤형 대응’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격차를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곳에 정책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농어촌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신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중심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농어촌 삶의 질과 관련된 다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함.
 -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각 부처 정책 및 과제의 협의·조정과 이행 담보를 위한 추진체계를 내실화함.

- 정책적 활용도가 낮고, 구체적 운영 기준 미비, 강제 이행 방안 등의 부재로 당초 의도한 목표 달성에 한계를 보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추진함.
- 개별 사업 및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나아가 중앙-지방-민관 협치 거버넌스 기반의 추진체제로 고도화함.
 - 지역 스스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 체감형 정책을 자율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의 4대 부문과 19개 항목으로 구성됨.
 -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의 생활SOC 확충 기조를 고려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일부 항목을 개편함.
 - 국가적 생활SOC 확대 계획에 따라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3개 항목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반영하여 접근성 개념이 적용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농어촌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한 최소 접근시간을 목표치로 설정함.
 - 농어촌 지역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며, 공급 여건을 지속 측정·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노인복지, 상수도, 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등 총 12개 항목은 변경 없이 유지함.

〈표 2-1〉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기초인프라의 국가 최저기준 비교

구분	농어촌서비스기준(농림축산식품부)	기초인프라 최저기준(국토교통부)
근거 법령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 및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국토부 공고)
대상 지역	농어촌 및 도농복합시	도시
목표치 설정 (최저기준)	농어촌 및 항목의 특성을 고려해 설정 (접근성, 행정구역 내 존재 유무 등)	시설에 도착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설정 (기본방침상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고려한다고 명시)
차별 항목	주택, 상수도, 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방법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근린공원, 거점 공원, 주거편의시설, 마을 주차장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2020. '2020~2024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표 2-2〉 기본계획 시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구분	부문	항목
제2차 기본계획 (2011-2014)	1. 주거	① 주택, ② 난방, ③ 마을공동시설, ④ 상수도, ⑤ 하수도
	2. 교통	⑥ 대중교통, ⑦ 여객선, ⑧ 인도
	3. 교육	⑨ 유치원/초·중교, ⑩ 고등학교, ⑪ 폐교, ⑫ 방과후학교, ⑬ 의건수련, ⑭ 평생교육
	4. 보건의료	⑮ 진료서비스, ⑯ 순회방문, ⑰ 의약품 구입
	5. 복지	⑱ 노인, ⑲ 청소년, ⑳ 아동, ㉑ 영유아, ㉒ 다문화가족
	6. 응급	㉓ 응급서비스, ㉔ 도서·벽지 서비스,
	7. 안전	㉕ 경찰 순찰, ㉖ 방법설비, ㉗ 경찰 출동, ㉘ 소방 출동
	8. 문화	㉙ 독서, ㉚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㉛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9. 정보통신	㉜ 초고속망
제3차 기본계획 (2015-2019)	1. 보건복지	① 진료 서비스, ② 응급 서비스, ③ 노인, ④ 영유아
	2. 교육	⑤ 초·중학교, ⑥ 평생교육
	3. 정주생활기반	⑦ 주택, ⑧ 상수도, ⑨ 난방, ⑩ 대중교통, ⑪ 광대역통합망
	4. 경제활동·일자리	⑫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5. 문화·여가	⑬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6. 환경·경관	⑭ 하수도
	7. 안전(생활안전)	⑮ 방법설비, ⑯ 경찰 순찰, ⑰ 소방 출동
제4차 기본계획 (2020-2024)	1. 보건의료·복지	① 진료, ② 응급의료, ③ 영유아 보육·교육, ④ 노인복지
	2. 교육·문화	⑤ 초·중등교육, ⑥ 평생교육, ⑦ 문화, ⑧ 도서관, ⑨ 체육시설
	3. 정주 여건	⑩ 주택, ⑪ 상수도, ⑫ 하수도, ⑬ 난방, ⑭ 대중교통, ⑮ 생활폐기물, ⑯ 방법설비, ⑰ 경찰순찰, ⑱ 소방출동
	4. 경제활동	⑲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1.2. 항목별 내용 및 목표치 도출 근거

- (접근성 측정 항목) 진료, 영유아 보육·교육, 초·중등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항목은 마을에서 주요 서비스시설까지 일정 시간 내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
- 서비스의 위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항목은 30분~1시간,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은 20분, 초·중등교육 항목은 10분, 문화 항목은 40분, 도서관 항목은 10분, 체육시설 항목은 30분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 농어촌 주민의 거주지²⁾ 및 서비스시설³⁾의 위치, 도로망 정보⁴⁾ 등을 활용하여 주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서비스시설(closest facility)까지 자동차로 소요되는 시간을 농어촌 차량 이동 평균속도(32.2km/h)⁵⁾를 이용하여 측정함.

참고: 항목별 목표시간 도출 방식

- ◆ 마을에서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계층별 시간 도출
- 전체 마을(행정리, 36,786개소) 가운데 소재지 마을 및 소재지와의 시간 거리가 5분 이내인 마을(3,422개소)을 제외한 마을 33,364개소를 기준으로 마을부터 시설까지의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서비스 계층별 기준을 제시
 - 서비스 계층별 시간 거리에 따라 시설이 주로 면 소재지에 입지할 경우 10분,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경우 15분, 시·군 소재지에 있는 경우 20분으로 기준 설정
 - 계층별 기준을 반영하여 진료, 문화, 체육시설은 시·군 소재지 이상의 고차 중심지에 위치하므로 각각 30분~1시간, 40분, 30분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은 시·군 소재지에 위치하여 20분으로, 초·중등교육과 도서관은 면 소재지에 위치하여 10분으로 목표시간 설정

구분	읍면 사무소	거점 읍·면 소재지 주요 시설			고차 중심지에 속하는 주요 시설		
		재래시장	고등학교	시외버스터미널	상설영화 상영관	백화점·대형할인점	종합병원
시설까지 소요 시간(분)	9.6	14.2	14.6	14.6	24.9	28.7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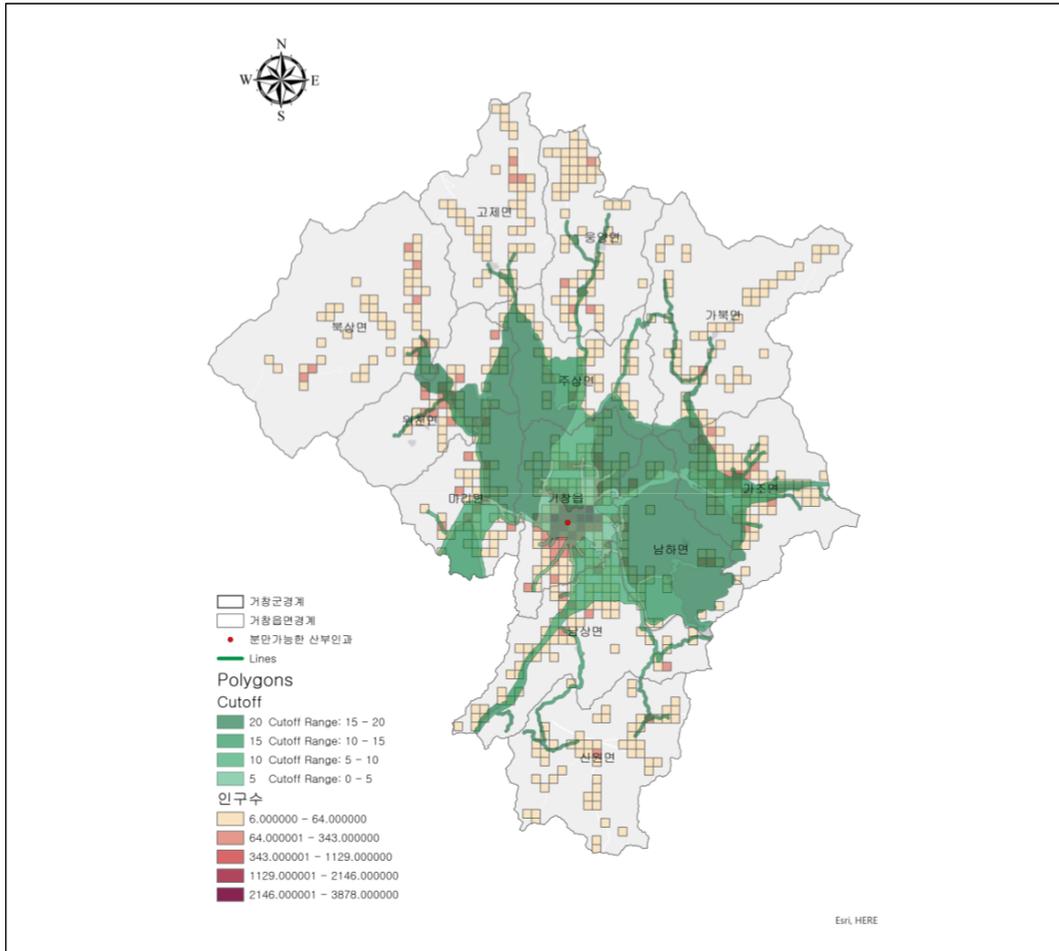
* 근거: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 2)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에서 제공하는 인구수가 포함된 500m×500m 격자 정보임. 격자 정보는 '국토를 직각으로 교차하는 가로(n)와 세로(m)선으로 구분하여 n×m 개로 구획하여 표현하는 공간 단위(mesh)의 집합'을 의미함.
- 3) 항목 관련 개별 시설 주소를 공간정보로 변환함.
- 4)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orea Transport Data Base)의 교통망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구축한 도로망 정보임.
- 5) 농어촌 노선버스 평균 운행속도(25.9km/h)와 특·광역시의 승용차와 시내버스 운행속도 차이(6.3km/h)를 반영함 (국토교통부 '19년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18년 국가교통통계).

- (서비스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측정) 평균 접근시간 산출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 제시한 목표시간 내 서비스를 이용가능한 지역을 도출하여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자 함.
 - ‘주민 거주지’는 국토정보플랫폼 격자 체계를 기반으로 인구 5명 이상이 거주하는 500m×500m 격자로 정의함.
 - ‘주민 거주지’ 중 해당 서비스시설까지 농어촌의 평균 차량 이동 속도(32.2km/h)로 목표시간 내 도달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수 비율을 측정하고, 농어촌 시·군별 최소 기준에 도달가능한 거주지 비율을 제시함.

- (접근성 및 서비스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측정 예시) 경상남도 거창군의 산부인과 위치와 주민 거주지 격자를 지도에 표시한 후, 지역 내 산부인과 접근성과 접근성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을 측정함.
 - 거창군 소재 산부인과(빨간색 점)와 주민 거주지 격자 간 거리를 농어촌 평균 차량 이동 속도를 적용하여 평균 접근시간을 측정함.
 - 서비스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목표시간 내 산부인과에 도착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격자수(초록색 범위에 근접한 주민 거주지)로 측정함.

〈그림 2-1〉 산부인과 항목 접근성 및 주민 거주지 비율 측정(사례: 경상남도 거창군)



○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항목의 기준으로 설정함.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응급서비스 항목과 내용은 동일하나, 접근성 측정 항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측정 기준을 기존 목표시간 내 도착 비율에서 평균 출동 소요 시간으로 변경함.

○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군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함.

-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서비스의 범위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검토 후 최종 확정함.

○ (평생교육) 읍·면 내에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항목 내용으로 설정함.

- 제3차 기본계획 기간에서 평생교육 시설 범위로 설정하지 않았던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목표치를 70%로 상향함.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은 비형식 시설⁶⁾이 적합한 것으로 논의되어 학교 및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시설은 측정 범위에서 제외함.

○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서의 거주 여부 및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비율을 항목 내용으로 설정하였으나, 최저주거기준 관련 자료 구득이 불가능한 관계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비율만을 점검·평가함.

- 2021년부터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실적 자료를 근거로 점검·평가함.

○ (상수도) 면 지역 보급률에 따른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목표치는 최근 3년간의 실적을 반영하여 설정함.

- 최근 3년간 결과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제4차 기본계획의 종료시점(2024년)까지 매년 3% 실적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시, 예상값을 도출하여 목표치를 85%로 설정함.

6) 평생교육시설은 준형식과 비형식으로 구분됨. 준형식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및 대학교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학교 시설을 의미하며,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외의 시설을 의미함.

○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에 따른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환경부와 협의하여 목표치를 76%로 설정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하수도 항목과 환경부의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동일한 지표이나, 제3차 기본계획 기간에 대상 지역 범위에 차이⁷⁾가 있어 협의를 통해 군 지역으로 통일함.

○ (난방) 제4차 기본계획 종료 시점(2024년)까지의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추정치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함.

-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및 전국 도시가스 보급 추이에 따라 목표치를 67.9%로 설정함.

〈표 2-3〉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전망

단위: %, 천 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급률	66.8	67.2	67.5	67.7	67.8	67.9
가정용 수요가수	1,480	1,539	1,597	1,655	1,715	1,774
주민등록세대수	2,446	2,528	2,367	2,446	2,528	2,613

주: 가정용 수요가수 및 최근 5년 주민세대수 연평균증가율로 추정

○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1일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법정리 비율을 점검·평가하며, 도서 지역 본섬 기준 여객선 운행 여부를 보완지표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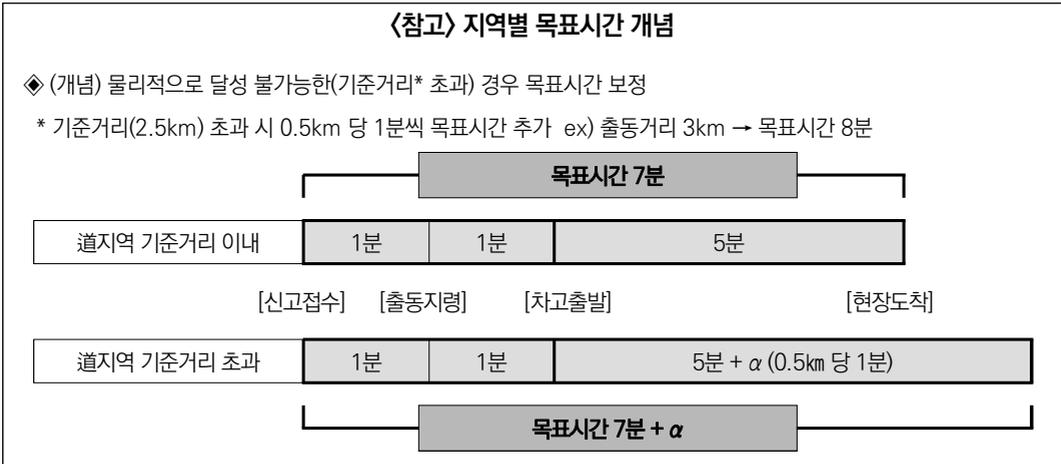
7) 제3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시·군 대상, 환경부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발표하였음.

- (생활폐기물) 행정리내 영농·생활 폐기물 수집 가능 여부를 점검·평가함.
 - 제4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활SOC 확충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추가한 항목으로, 전문가 자문 및 부처 협의를 통해 행정리 내 영농·생활폐기물 집하장이 100%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함.

- (방법설비)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행정리 비율을 점검하며, 최근 3년간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함.
 - 항목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나,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과정에서 법률에 적합한 용어로 일부 수정됨.

-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한 탄력순찰 시행 여부를 점검·평가함.
 - 주민의 순찰 요청과 112신고 및 범죄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 지점의 지리적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순찰의 범위 및 종류, 반복·거점 순찰 여부 등을 결정하여 순찰하는 제도임.
 - 대상 지역은 1일 1회 이상 순찰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순찰 실시율을 점검·평가함.

-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점검·평가하며, 목표치는 70%로 설정함.
 - 기본 목표시간 7분을 기준으로 기준거리(2.5km) 초과 시 0.5km당 1분씩 목표시간을 추가하는 '지역별 목표시간' 개념으로 측정 방식을 개편하고 달성 여부를 파악함.



○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측정하며,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이행실태 점검 결과 추이를 검토해 설정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최근 3년간 평균실적을 바탕으로 제4차 기본계획 종료 시점 (2024년)까지 매년 3% 실적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예상값을 도출하여 목표치를 86%로 설정함.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국가최소기준 및 목표치

부문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분, %)
1. 보건의료·복지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능하다.	30분 ~1시간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분
	영유아보육·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80%

(계속)

부문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분, %)
2.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3. 정주여건	주택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23%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85%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76%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68%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기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100%
	생활폐기물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을 내 (100%)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60%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100%
4. 경제활동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8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3호의 [별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2. 점검 방법 및 자료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등 4대 부문의 19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한 국가최소기준을 마련하고, 139개 농어촌 시·군의 항목별 이행실태를 측정함.
- 공식통계 및 부처 협조자료,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로 자료를 구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자료 구득이 불가능한 주택 항목(최저주거기준)을 제외하고 총 26개의 통계 자료가 필요함.
 - 공식통계 자료 10개, 부처 협조자료 10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자료 5개, 민간업체생산자료 1개를 활용함.
 - 통계 자료의 기준 시점은 2023년으로 최신자료 구득이 불가능한 일부 항목의 경우 2022년 기준임.

〈표 2-5〉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및 자료

부문	항목	세부항목	점검 방법	점검 자료	자료
1. 보건·의료·복지	진료	내과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4대 중요 과목에 해당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한 인접 의료기관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데이터	공식 통계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	시·군별 119 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	소방청: 소방서별 119구급대 출동 소요시간 현황	협조 자료
	영유아보육·교육	어린이집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 현황 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기관 주소록	협조 자료 공식 통계
		유치원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65세 이상 노인인구}×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공식 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공식 통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현황	행정 조사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노인인구				공식 통계	

(계속)

부문	항목	세부항목	점검 방법	점검 자료	자료
2.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초·중학교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교육통계서비스: 초·중학교 주소록	공식 통계
	평생교육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지자체조사: 비형식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현황	행정 조사
	문화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 문화원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문화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량):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공식 통계
	도서관	도서관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식 통계
	체육시설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체육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및 체육진흥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간이운동장) 주소	협조 자료
3. 정주 여건	주택	석면 슬레이트 주택지붕	{{(2014부터 2021년까지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 실적) / 2014 슬레이트 주택 수} × 100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실적 - 주택 철거·처리 분야	협조 자료
	상수도	-	(시·군별 면 지역 지방 및 광역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 지역 주민 등록인구)×100	환경부: 상수도 통계	공식 통계
	하수도	-	(군 지역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 군 지역별 인구)×100	환경부: 하수도 통계	공식 통계
	난방	-	(읍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 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 수 / (읍·면 지역 총 가구 수 -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 자료
	대중교통	-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법정리 수 / 총 법정리 수)×100	대중교통 버스노선 정보 (※아로정보기술)	민간 기업 자료
			도서 지역 여객선 운항 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실적	협조 자료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처리장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환경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황	협조 자료
		생활폐기물 처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100	지자체조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 행정리 수	행정 조사
	방법설비	-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100	지자체조사: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행정 조사
경찰순찰	-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시간·장소에 대해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 여부	경찰청: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지역 및 탄력순찰 실시 현황	협조 자료	
소방출동	-	(시·군별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 건수 / 총 출동 건수)×100	소방청: 각 시·군별 화재 발생 장소 및 출동거리	협조 자료	
4. 경제 활동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	시·군별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① 창업지원센터 유무 ②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③ 전담인력 고용 여부 ④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행정 조사

〈표 2-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자료 구축 현황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 년도	구축 여부
1. 보건·의료·복지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주소자료	2023	○ (공식통계)
	응급의료	소방서별 119 구급대 응급출동 소요시간 현황자료	2023	○ (소방청 협조)
	영유아 보육·교육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 현황 자료	2023	○ (보건복지부 협조)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주소록	2023	○ (공식통계)
	노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2022	○ (공식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3	○ (공식통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현황	2023	○ (지자체 조사)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노인인구	2023	○ (공식통계)
2.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주소록	2023	○ (공식통계)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수	2023	○ (지자체 조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2022	○ (공식통계)
	도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	○ (공식통계)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및 체육진흥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간이운동장) 주소	2023	○ (문체부 협조)
3. 정주여건	주택	환경부: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실적 - 주택 철거·처리 분야	2023	○ (환경부 협조)
	상수도	환경부: 상수도통계	2022	○ (공식통계)
	하수도	환경부: 하수도통계	2022	○ (공식통계)
	난방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2022	○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실적	2022	○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노선 정보	2023	○ (민간기업 자료 구입)
		도서지역(시·군)별 본도(읍·면) 여객선 운항 현황	2023	○ (해양수산부 협조)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황	2023	○ (환경부 협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 행정리 수		2023	○ (지자체 조사)	

(계속)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 년도	구축여부
	방법설비	시·군별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2023	○ (지자체 조사)
	경찰순찰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지역 및 실시 현황	2023	○ (경찰청 협조)
	소방출동	시·군별 화재 발생 장소 및 출동거리	2023	○ (소방청 협조)
4. 경제 활동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i)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 센터 등 취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센터 유무 iii)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횟수(연간)	2023	○ (지자체 조사)

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1. 주요 점검 결과

○ 농어촌 139개 지역에 대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4대 부문 19개 항목 중 14개(전년 대비 달성 항목 2개 증가)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함.

- 보건의료·복지 부문, 교육·문화 부문, 경제활동 부문 전 항목과 정주여건 부문 중 4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함.

〈표 3-1〉 2023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목표치 달성 항목 현황

부문	항목 수	보건의료·복지 (4항목)	교육·문화 (5항목)	정주여건 (9항목)	경제활동 (1항목)
달성 항목	14	4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보육·교육, 노인복지	5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4 주택, 하수도 , 난방, 방법설비	1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미달성 항목	5	-	-	5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

주: 밑줄 표시는 전년도 '미달성'에서 '달성'으로 전환된 항목임.

○ 부문별 점검 결과,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부문의 모든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정주여건 부문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항목이 5개로,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정주여건 부문의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은 이행실태 개선 및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3-2〉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부문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분, %)	이행실태
보건의료·복지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30분~1시간	22.7분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분	12.1분
	영유아보육·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9.1분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80%	100%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7.3분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85.6%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24.0분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9.7분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15.8분

(계속)

부문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분, %)	이행실태
정주여건	주택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23%	38.4%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85%	82.8%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76%	76.6%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68%	72.7%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100%	89.2%
	생활폐기물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을 내 (영농/생활 100%)	80.7% 26.7%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60%	75.4%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100%	98.2%
경제활동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58.4%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 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86%	87.1%

주: 음영 표시는 미달성 항목임.

2. 세부 점검 결과

2.1. 보건 의료·복지 부문

2.1.1.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주민 거주지와 4대 주요 진료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간의 접근성을 측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의료기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30분⁸⁾ 이내면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주소 정보와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를 활용함.
 - 전국의 내과 6,989개, 외과 1,932개, 산부인과 1,912개, 소아청소년과 3,031개 의료시설의 주소를 지리정보 형태로 구축하여 점검·평가에 활용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에서 4대 주요 진료과목 의료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2.7분으로 목표시간 내 접근 가능함.
 - 전체 농어촌 시·군 139개 중 92개 지역(66.2%)은 30분 내 모든 주요과목 진료가 가능함.

⁸⁾ 기준은 30분~1시간 이내로 제시하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30분을 기준으로 서비스기준을 점검함.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전체 농어촌 시·군의 진료과목별 평균 접근성 측정 결과, 내과 18.4분, 외과 21.8분, 소아청소년과 24.8분, 산부인과 25.7분으로 나타남.
- 지역 구분에 따른 4대 중요 진료과목 접근성 측정 결과, 군 지역은 평균 28.1분, 도농복합시는 평균 17.4분으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10.7분 더 소요됨.
 - 군 지역은 내과 21.9분, 외과 26.1분, 소아청소년과 32.0분, 산부인과 32.3분이 소요됨.
 - 도농복합시는 내과 15.1분, 외과 17.6분, 소아청소년과 17.8분, 산부인과 19.3분이 소요됨.

〈표 3-3〉 진료 항목의 지역별·진료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지역 구분	주요 진료과목 평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군	28.1	21.9	26.1	32.0	32.3
도농복합시	17.4	15.1	17.6	17.8	19.3
전체 농어촌 시·군	22.7	18.4	21.8	24.8	25.7

- 농어촌 시·군에서 진료 항목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73.5%임.
 - 진료과목별로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내과 82.2%, 외과 76.1%, 소아청소년과 68.5%, 산부인과 67.0%로 나타남.
 - 지역유형별로 진료과목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군 지역 62.0%, 도농복합시 84.7%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 보다 22.7%p 낮음.
 - 특히, 4대 주요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항목은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와 비교해 각각 30.4%p, 28.4%p 낮아 군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여건이 크게 열악한 상황임.

- 진료 항목의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매우 낮은 시·군이 존재함.
 - 내과 진료를 목표시간(30분) 내 받을 수 있는 주민 거주지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송군(0.0%), 경상남도 산청군(6.9%), 인천광역시 옹진군(19.4%) 순임.
 - 외과 진료를 목표시간(30분) 내 받을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0.6%), 강원도 인제군(2.3%), 전라북도 장수군(6.2%), 경상남도 산청군(6.4%), 경상남도 의령군(8.6%) 순임.
 -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목표시간(30분) 내 받을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0.0%), 강원도 화천군(0.0%), 경상북도 영양군(0.0%), 경상북도 청송군(0.0%), 전라남도 진도군(0.0%), 전라북도 무주군(0.4%) 순임.
 - 산부인과 진료를 목표시간(30분) 내 받을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 평창군(0.0%), 강원도 화천군(0.0%), 경상북도 영양군(0.0%), 경상북도 청송군(0.0%), 경상남도 산청군(0.1%), 전라북도 무주군(0.4%), 경상남도 하동군(0.8%) 순임.

〈표 3-4〉 진료 항목의 지역별·진료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지역 구분	주요 진료과목 평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군	62.0	75.4	66.6	53.1	52.7
도농복합시	84.7	88.8	85.4	83.5	81.1
전체 농어촌 시·군	73.5	82.2	76.1	68.5	67.0

- 동·읍·면 구분에 따른 4대 주요 진료과목 평균 접근시간은 면부가 26.2분으로, 읍부(17.8분)보다 8.4분, 동부(5.4분)보다 20.8분이 더 소요됨.
 - 내과는 면부(21.9분)가 읍부(12.0분)보다 9.9분, 동부(4.5분)보다 17.4분 더 소요됨.
 - 외과는 면부(24.9분)가 읍부(17.6분)보다 7.3분, 동부(5.9분)보다 19.0분 더 소요됨.
 - 소아청소년과는 면부(28.6분)가 읍부(20.0분)보다 8.6분, 동부(5.1분)보다 23.5분 더 소요됨.
 - 산부인과는 면부(29.3분)가 읍부(21.6분)보다 7.7분, 동부(6.1분)보다 23.2분 더 소요됨.

〈표 3-5〉 진료 항목의 동·읍·면부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동·읍·면 구분	주요 진료과목 평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동부	5.4	4.5	5.9	6.1
읍부	17.8	12.0	17.6	21.6
면부	26.2	21.9	24.9	29.3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 동·읍·면 구분에 따른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68.1%, 읍부 81.1%, 동부 99.7%로 면부가 가장 낮으며, 진료과목 중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동부와 면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내과 진료를 목표시간(30분) 내 받을 수 있는 거주지 비율은 면부(77.5%)가 읍부(91.3%)보다 13.8%p 낮으며, 동부(99.9%)보다는 22.4%p 낮음.
- 외과 진료를 목표시간(30분) 내 받을 수 있는 거주지 비율은 면부(71.7%)가 읍부(81.2%)보다 9.5%p 낮으며, 동부(99.9%)보다는 28.2%p 낮음.
-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목표시간(30분) 내 받을 수 있는 거주지 비율은 면부(62.4%)가 읍부(76.4%)보다 14.0%p 낮으며, 동부(99.9%)보다는 37.5%p 낮음.
- 산부인과 진료를 목표시간(30분) 내 받을 수 있는 거주지 비율은 면부(60.8%)가 읍부(75.3%)보다 14.5%p 낮으며, 동부(99.2%)보다는 38.4%p 낮음.

〈표 3-6〉 진료 항목의 동·읍·면부 진료과목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동·읍·면 구분	주요 진료과목 평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동부	99.7	99.9	99.9	99.2
읍부	81.1	91.3	76.4	75.3
면부	68.1	77.5	62.4	60.8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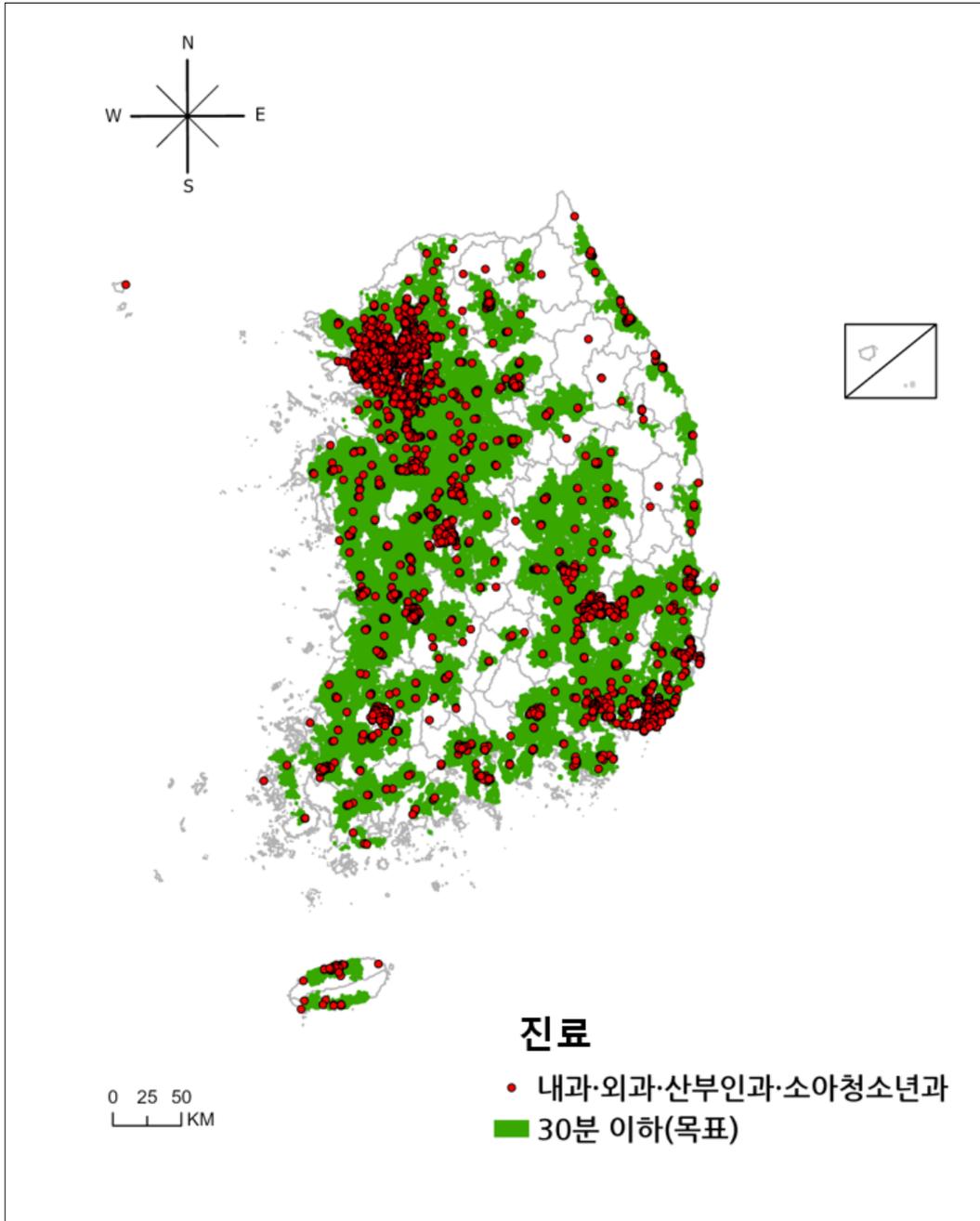
- 진료과목별로 목표시간(30분) 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시·군 수는 내과 125개(89.9%), 외과 114개(82.0%), 소아청소년과 99개(71.2%), 산부인과 98개(70.5%)이며, 모든 진료과목 진료가 30분 내 가능한 농어촌 시·군은 139개 중 92개(66.2%)임.
- 군 지역은 82개 중 39개(47.6%), 도농복합시는 57개 중 53개(93.0%) 지역에서 목표 시간(30분) 내 4대 중요 진료과목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표 3-7〉 진료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지역 구분	주요 진료과목 전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시·군 수	비율	시·군 수	비율	시·군 수	비율	시·군 수	비율	시·군 수	비율
군	39 / 82	47.6	70 / 82	85.4	60 / 82	73.2	45 / 82	54.9	44 / 82	53.7
도농복합시	53 / 57	93.0	55 / 57	96.5	54 / 57	94.7	54 / 57	94.7	54 / 57	94.7
전체 농어촌 시·군	92 / 139	66.2	125 / 139	89.9	114 / 139	82.0	99 / 139	71.2	98 / 139	70.5

〈그림 3-1〉 진료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1.2.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신고일시를 기점으로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을 측정함.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139개 농어촌 시·군 중 소방서가 위치한 135개 지역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119구급대가 30분 이내(목표치) 현장에 도착한 경우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소방청 협조로 제공받은 '소방서별 119구급대 소요시간' 자료를 기반으로 농어촌 응급의료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전국의 263개 소방서별 119구급대 출동 건수와 평균소요시간(초)을 활용하여 시·군 별로 평균 출동 소요시간을 집계함.
 - '23년도를 기준으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은 4곳(인천 옹진군,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이며, 점검 대상은 올해 소방서가 신설된 전북 무주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을 포함하여 135곳임.
 - 전국 119구급대 총 출동 건수는 2,016,315건이며, 이중 908,538건(45.1%)이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함.
 -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한 119구급대 출동 건 중 98.3%(893,237건)는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 중 소방서가 위치한 135개 시·군의 119구급대 평균 소요시간은 12.1분으로, 목표치(30분)를 달성함.

-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 135곳 중 135곳(100%)에서 119구급대가 평균 30분 내 현장에 도착하여 모든 농어촌 시·군이 목표치를 달성함.
- 소방서 단위로 데이터가 집계되는 관계로 소방서가 없는 4개 지역(인천광역시 옹진군,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울릉군)은 제외함.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지역 구분에 따른 119구급대 평균 소요시간은 군 지역 12.8분, 도농복합시 11.1분으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평균 1.7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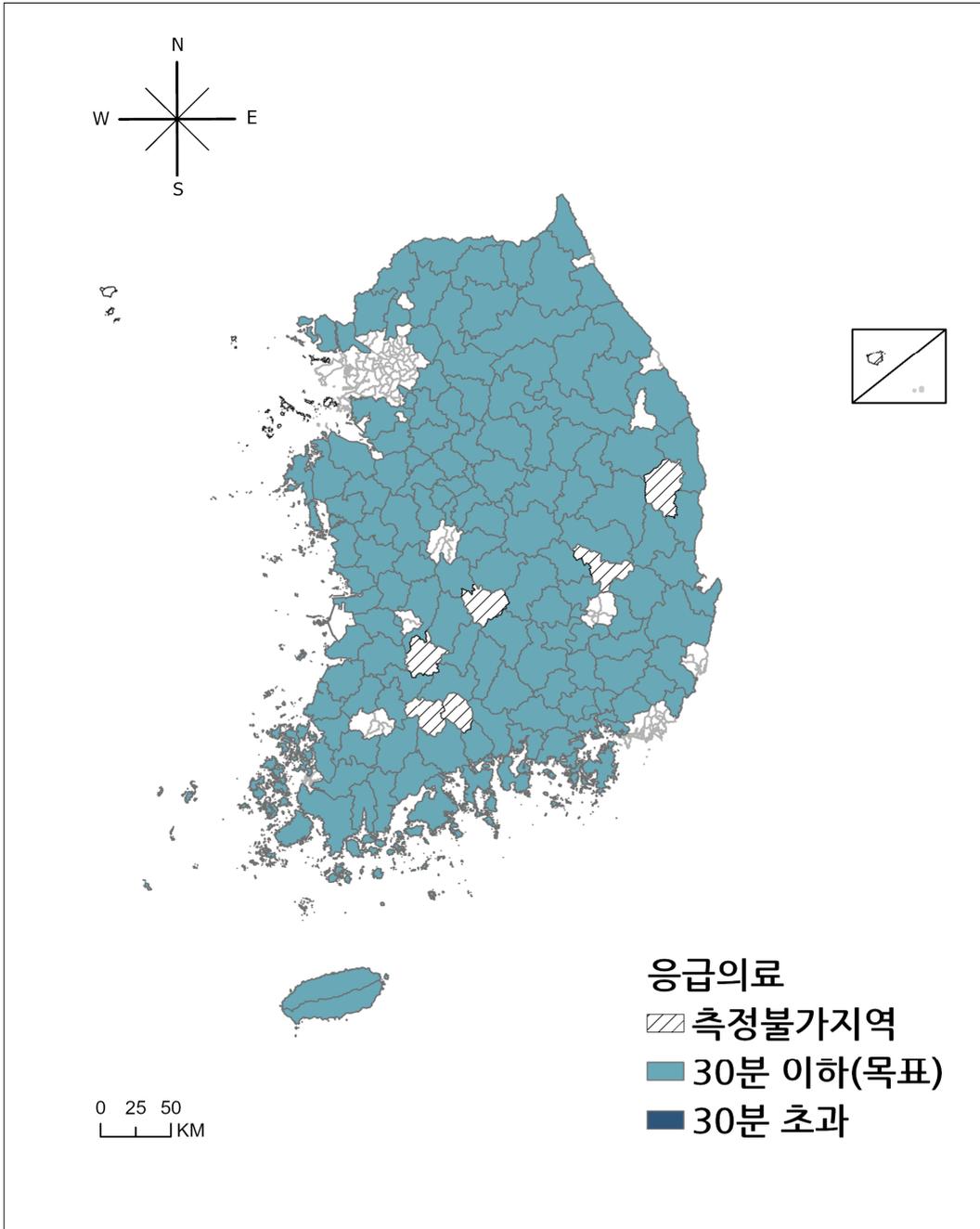
〈표 3-8〉 응급의료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분, 개, %

지역 구분	평균 도착 시간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12.8	78 / 78	100
도농복합시	11.1	57 / 57	100
전체 농어촌 시·군	12.1	135 / 135	100

주: 농어촌 시·군 중 소방서가 위치한 135개 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그림 3-2〉 응급의료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1.3. 영유아 보육·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주민 거주지와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의 접근성을 측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0분 이내면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자료,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구축한 유치원 주소자료를 활용함.
 - 전국의 어린이집 15,045개소, 유치원 8,599개소의 주소자료를 지리정보 형태로 구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9.1분으로 목표시간(20분) 내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이용이 가능함.
 - 자가 차량 외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이동 경로 증가에 따라 시간이 증가하여 목표시간(20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농어촌 시·군의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평균 접근시간은 9.1분임.
 - 지역 구분에 따라서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군 지역 10.7분, 도농복합시 7.5분으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3.2분 더 소요됨.

○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측정 결과, 어린이집 6.2분, 유치원 12.0분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군 지역은 어린이집에 6.9분, 유치원에 14.5분이 소요되며, 도농복합시는 어린이집에 5.4분, 유치원에 9.6분 소요됨.

〈표 3-9〉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지역 구분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평균		
		어린이집	유치원
군	10.7	6.9	14.5
도농복합시	7.5	5.4	9.6
전체 농어촌 시·군	9.1	6.2	12.0

○ 목표시간(20분) 내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은 89.9%임.

- 지역유형별로 목표시간(20분) 내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에 접근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군 지역 85.9%, 도농복합시가 93.8%로 7.9%p의 편차가 있음.
- 목표시간(20분) 내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지역(70% 미만)은 전라북도 임실군(55.7%), 강원도 영월군(60.5%), 강원도 횡성군(65.8%), 강원도 정선군(66.3%), 강원도 홍천군(67.0%), 충청북도 단양군(68.2%) 순임.

〈표 3-10〉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지역 구분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평균		
		어린이집	유치원
군	85.9	97.5	74.2
도농복합시	93.8	98.7	88.9
전체 농어촌 시·군	89.9	98.1	81.6

○ 동·읍·면 구분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접근성은 면부가 평균 10.6분으로, 읍부(6.5분)보다 4.1분, 동부(2.9분)보다 7.7분 더 소요됨.

〈표 3-11〉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동·읍·면 구분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평균		
		어린이집	유치원
동부	2.9	2.9	2.9
읍부	6.5	5.3	7.7
면부	10.6	6.8	14.3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 동·읍·면 구분에 따른 목표시간(20분) 내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에 도달 가능한 주민 거주 비율은 면부 86.9%, 읍부 96.2%, 동부 99.9%로 나타남.

- 목표시간(20분) 내 어린이집에 도달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97.7%, 읍부 99.0%, 동부 99.9%, 유치원의 경우 면부 76.1%, 읍부 93.4%, 동부 99.8%로 나타남.

〈표 3-12〉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동·읍·면 구분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평균		
		어린이집	유치원
동부	99.9	99.9	99.8
읍부	96.2	99.0	93.4
면부	86.9	97.7	76.1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 농어촌 시·군 139개 지역 중 130개 지역(93.5%)이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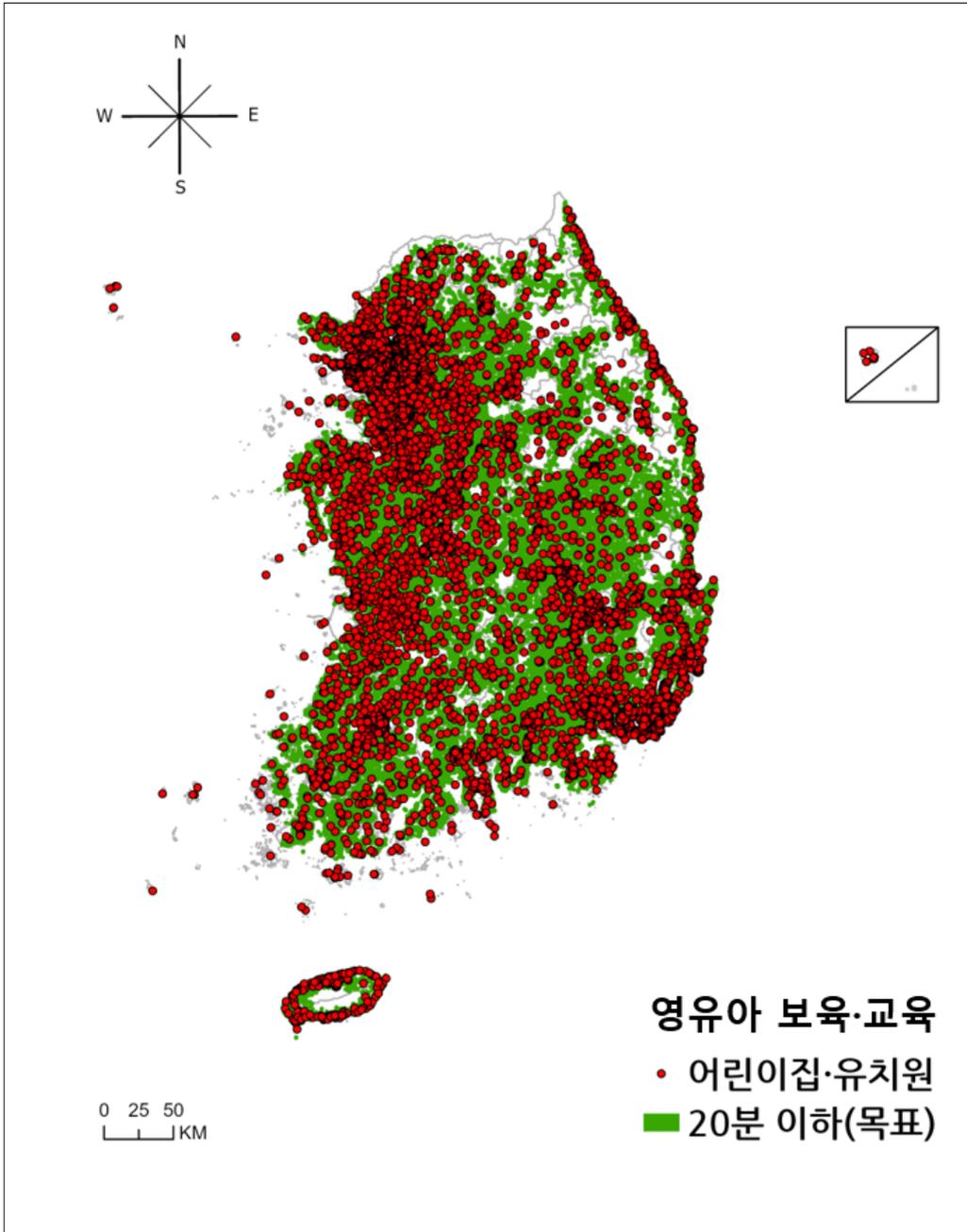
- 군 지역은 82개 중 74개(90.2%), 도농복합시는 57개 중 56개(98.2%)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함.

〈표 3-13〉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지역 구분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시·군 수	시·군 비율	시·군 수	시·군 비율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74 / 82	90.2	82 / 82	100	74 / 82	90.2
도농복합시	56 / 57	98.2	56 / 57	98.2	56 / 57	98.2
전체 농어촌 시·군	130 / 139	93.5	138 / 139	99.3	130 / 139	93.5

〈그림 3-3〉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1.4.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시·군의 비율을 측정함.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6.5%⁹⁾)로 설정하고, 지역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노인인구의 최소 6.5% 이상 제공하고 있는 시·군 비율을 측정함.
 - 전체 농어촌 시·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재가노인지원서비스¹⁰⁾ 이용자 수+노인맞춤돌봄서비스¹¹⁾ 이용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 100’이 6.5% 이상인 시·군 비율이 80% 이상이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노인인구’ 자료와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자료를 활용함.
 - 139개 농어촌 시·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4,198,417명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499,816명,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현원)는 149,510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78,481명임.

9) 6.5%=16.6%(재가노인 중 IADL제한) × 70%(기초연금수급비율) × 55.9%(독거 및 부부동거가구 비율)(출처: 2017년 노인실태조사 및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장래가구추계(2000~2045))

10)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서비스 기관(시설)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이 있음.

11)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

○ (점검 결과) 모든 농어촌 지역(100%)에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노인 가구(6.5%)를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목표치(80%)를 달성함.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전체 농어촌 지역에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6.5%)를 대상으로 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은 22.1%임.

- 지역 구분에 따른 분석 결과, 군 지역 27.6%, 도농복합시 19.7%로 지역별 편차가 있음.

○ 모든 농어촌 시·군에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노인가구(6.5%)를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달성률은 1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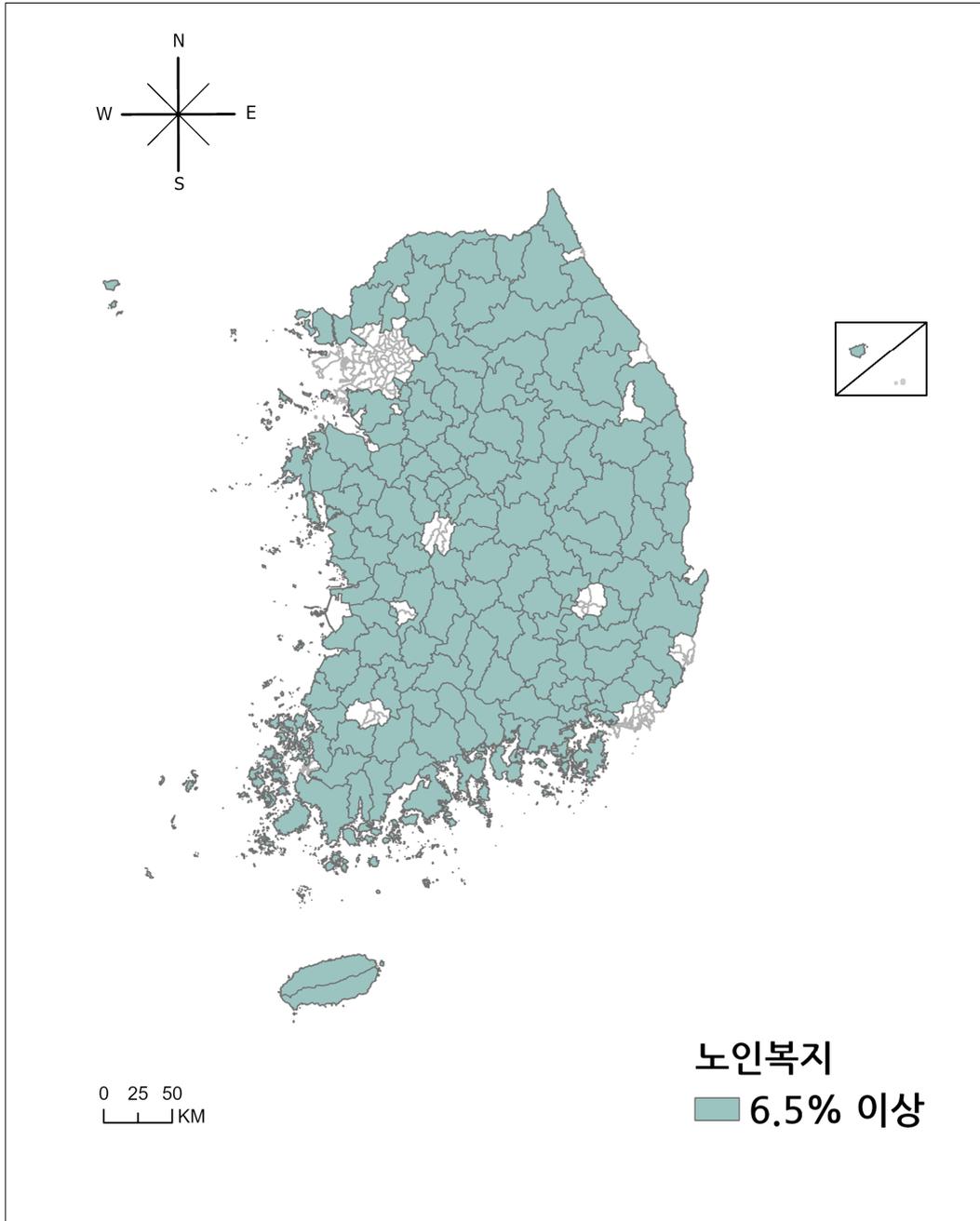
- 군 지역 82개, 도농복합시 57개 지역 모두 목표를 달성함.

〈표 3-14〉 노인복지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 구분	재가서비스 제공률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27.6	82 / 82	100
도농복합시	19.7	57 / 57	100
전체 농어촌 시·군	22.1	139 / 139	100

〈그림 3-4〉 노인복지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2. 교육·문화 부문

2.2.1. 초·중등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주민 거주지와 초·중학교 간의 접근성을 측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초·중학교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각각 평균 10분 이내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와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초·중학교 위치 정보를 활용함.
 - 전국의 초등학교 6,364개, 중학교 3,182개 주소자료를 지리정보 형태로 구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점검 결과) 초·중학교 평균 접근시간은 7.3분으로 목표시간 내 접근이 가능함.
 - 농어촌 139개 중 100개(71.9%) 시·군이 10분 이내에 초·중학교 접근 가능함.
 - 통학 차량 이용 시 이동 거리가 늘어나 목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농어촌 시·군의 초·중학교 평균 접근시간은 7.3분이며, 시설과 지역에 따른 편차가 나타남.
 - 군 지역에서는 초·중학교까지 도달하는데 8.0분, 도농복합시는 6.6분 소요됨.

- 시설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접근시간은 평균 5.8분, 중학교는 평균 8.8분 소요됨.
 - 초등학교의 경우 군 지역 평균 6.5분, 도농복합시 평균 5.2분 소요되며, 중학교의 경우 군 지역 9.6분, 도농복합시 8.1분 소요됨.

〈표 3-15〉 초·중등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지역 구분	초·중학교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군	8.0	6.5	9.6
도농복합시	6.6	5.2	8.1
전체 농어촌 시·군	7.3	5.8	8.8

- 농어촌 시·군 주민 거주지 75.4%는 10분 이내에 초·중학교 시설 모두 이용 가능함.
 - 초·중학교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군 지역 70.8%, 도농복합시 79.9%임.
- 시설유형에 따라서는 주민 거주지 85.1%가 초등학교 시설까지 목표시간(1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하며, 주민 거주지 65.7%는 중학교 시설까지 목표시간(1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목표시간(1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곳은 경상북도 청송군(54.9%), 경상북도 영양군(57.0%), 강원도 영월군(63.5%), 충청북도 단양군(63.2%) 순임.
 - 중학교 목표시간(1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33.5%), 충청북도 단양군(33.9%), 경상북도 영양군(36.3%), 대구광역시 군위군(37.5%) 순임.

〈표 3-16〉 초·중등교육 항목의 지역별·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지역 구분	초·중학교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군	70.8	60.6
도농복합시	79.9	70.7
전체 농어촌 시·군	75.4	65.7

○ 동·읍·면 구분에 따른 초·중학교 평균 접근시간은 면 지역이 8.1분으로, 읍 지역(6.2분)보다 1.9분, 동 지역(3.7분)보다 4.4분 더 소요됨.

- 초등학교 접근시간은 면 지역 평균 6.4분으로, 읍 지역(5.1분)보다 1.3분, 동 지역(3.1분)보다 3.3분이 더 소요됨.
- 중학교 접근시간은 면 지역 평균 9.8분으로, 읍 지역(7.3분)보다 2.5분, 동 지역(4.4분)보다 5.4분이 더 소요됨.

〈표 3-17〉 초·중등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동·읍·면 구분	초·중학교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동부	3.7	4.4
읍부	6.2	7.3
면부	8.1	9.8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 목표시간 10분 내 초·중학교 도달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70.7%, 읍부 83.1%, 동부 95.7%로 지역별 편차가 있음.

- 초등학교 목표시간(10분) 내 도달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82.1%, 읍부 90.0%, 동부 97.7%로 나타남.
- 중학교 목표시간(10분) 내 도달 가능한 거주지 비율은 면부 59.3%, 읍부 76.2%, 동부 93.6%로 나타남.

〈표 3-18〉 초·중등교육 항목의 동·읍·면부 시설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

동·읍·면구분	초·중학교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동부	95.7	97.7	93.6
읍부	83.1	90.0	76.2
면부	70.7	82.1	59.3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 농어촌 시·군 139개 중 100개 지역(71.9%)이 초·중등교육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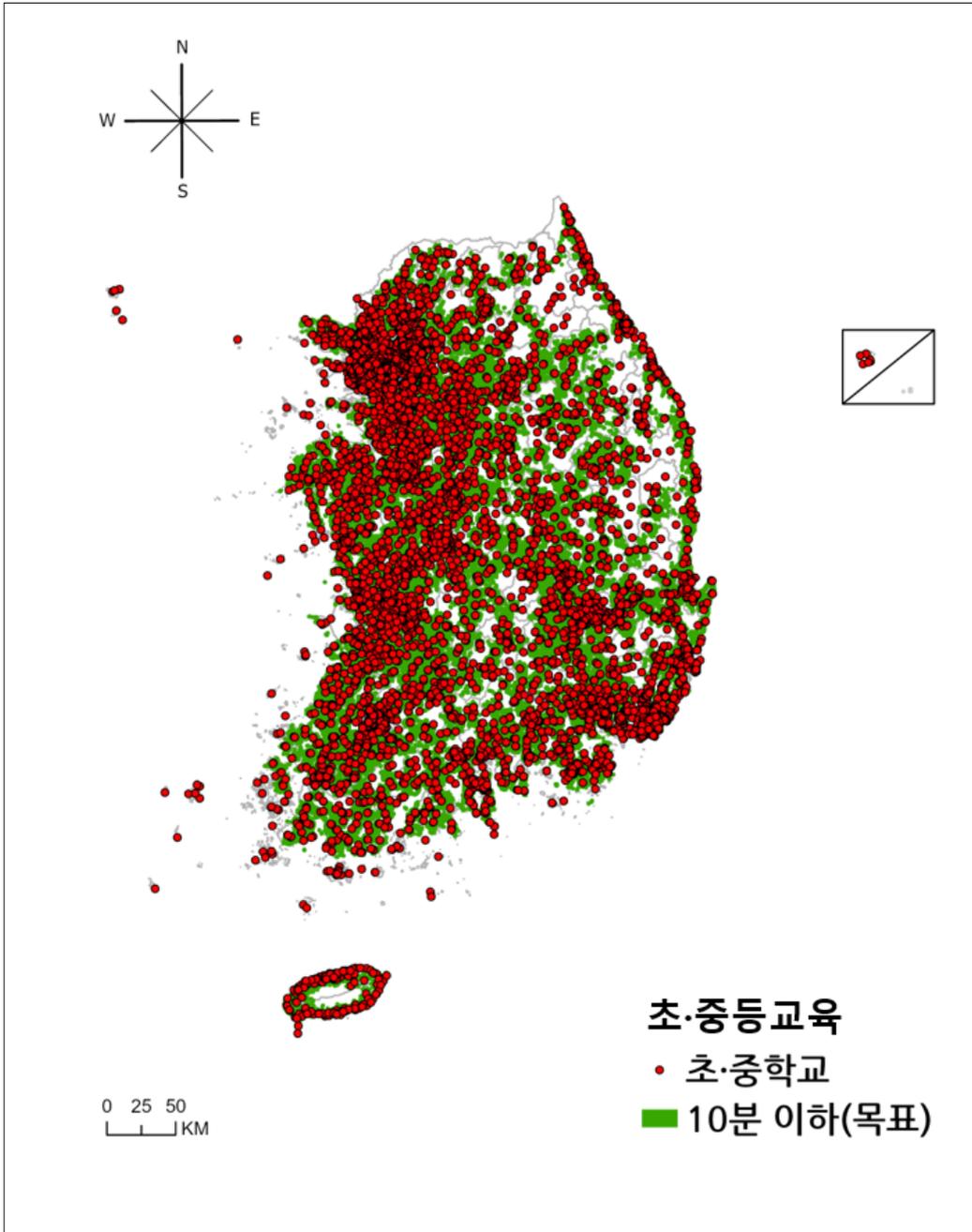
- 초등학교 평균 접근시간이 10분 이내인 농어촌 지역은 139개 중 138개(99.3%) 지역이며, 군 지역 82개 중 81개(98.8%) 지역, 도농복합시 57개 중 57개(100%) 지역임.
- 중학교 평균 접근시간이 10분 이내인 농어촌 지역은 139개 중 100개(71.9%) 지역이며, 군 지역 82개 중 51개(62.2%) 지역, 도농복합시 57개 중 49개(86.0%) 지역임.

〈표 3-19〉 초·중등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지역 구분	초·중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시·군 수	시·군 비율	시·군 수	시·군 비율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51 / 82	62.2	81 / 82	98.8	51 / 82	62.2
도농복합시	49 / 57	86.0	57 / 57	100.0	49 / 57	86.0
전체 농어촌 시·군	100 / 139	71.9	138 / 139	99.3	100 / 139	71.9

〈그림 3-5〉 초·중등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2.2.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읍·면 수를 조사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이 70%(목표치) 이상이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 비율을 농어촌 시·군별로 집계함.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및 동법 제21조의3에 근거한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 비율이 85.6%로 목표치를 달성함.
 - 농어촌 시·군 중 목표 달성 지역은 114개(82.6%) 지역이며, 달성률이 100%인 지역은 97개에 이룸.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농어촌 1,411개 읍·면 중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은 1,208개로, 이행실태는 85.6%임.
 - 군 지역 이행실태는 88.0%, 도농복합시 이행실태는 82.2%로 나타남.
 - 보완지표로서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읍·면 조사 결과, 군 지역 10.6%, 도농복합시 12.5%가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집계된 138개 농어촌 시·군 중 114개(82.6%) 지역이 목표치(70%)를 달성함.
 -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군 지역 82개 중 69개(84.1%) 지역, 도농복합시 56개 중 45개(80.4%)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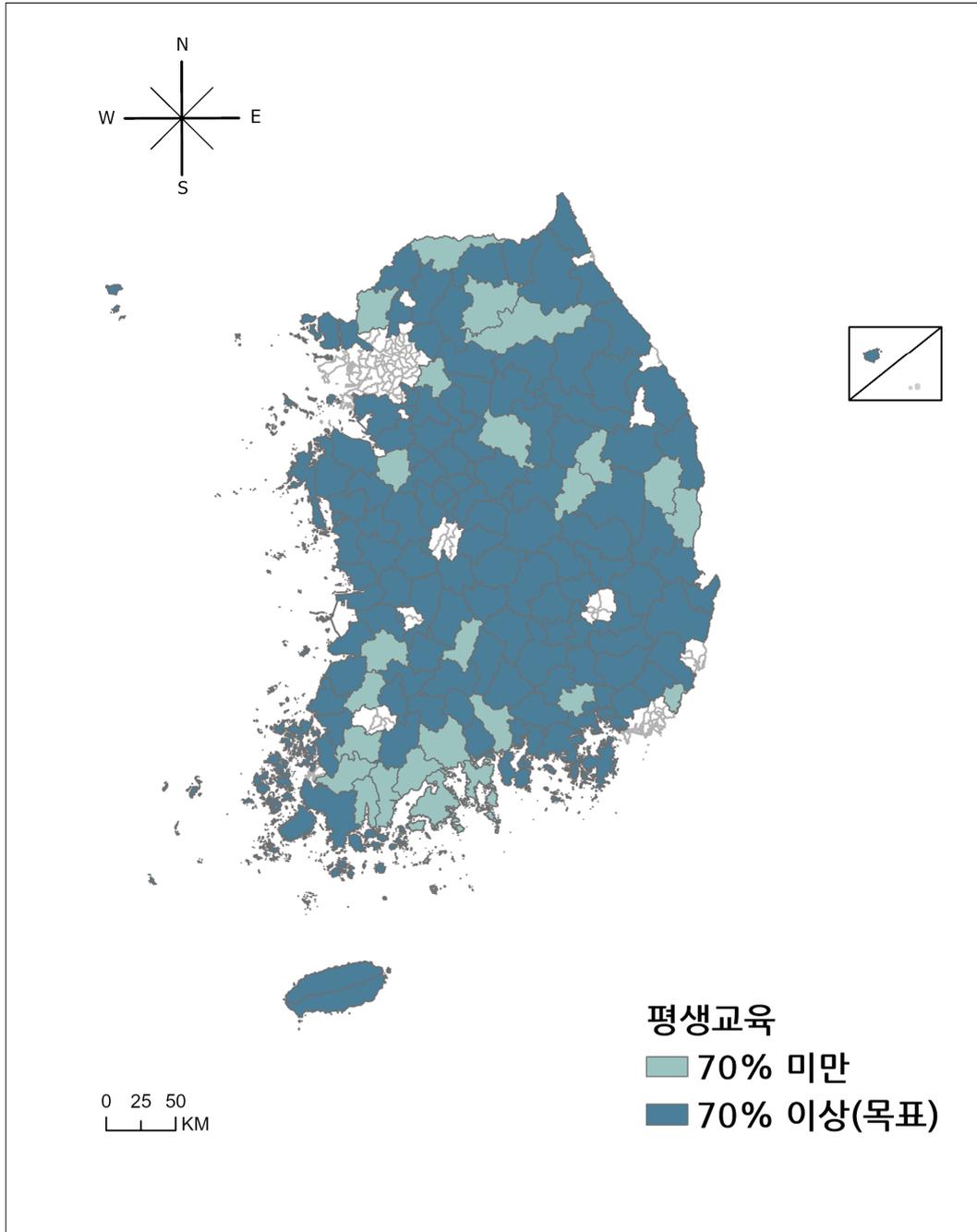
〈표 3-20〉 평생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 구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읍·면 비율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88.0	69 / 82	84.1
도농복합시	82.2	45 / 56	80.4
전체 농어촌 시·군	85.6	114 / 138	82.6

주: 경기 남양주시는 자료 미제공으로 목표 달성 지역 집계 시 포함하지 않음.

〈그림 3-6〉 평생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2.3.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주민 거주지와 문화시설 간의 접근성을 측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문화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40분 이내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를 활용함.
 - 전국의 문화시설 유형 중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의 498개 시설의 주소를 지리 정보 형태로 구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에서 문화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4.0분으로 목표시간(40분) 내에 문화시설 접근이 가능함.
 - 전체 농어촌 시·군 139개 중 133개 지역(95.7%)은 40분 내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등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농어촌 시·군 지역 중 군 지역 평균 26.0분, 도농복합시 평균 22.0분으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문화시설에 접근하는 데 4.0분 더 소요됨.
- 농어촌 시·군 주민 거주지 86.6%는 40분 이내에 문화시설 도달 가능함.
 - 문화시설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군 지역 82.9%, 도농복합시는 90.3%로 나타남.
 - 문화시설에 목표시간 4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50.0% 이하인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4.1%), 경상북도 청송군(6.0%), 전라남도 구례군(29.0%), 강원도 평창군(34.8%), 전라남도 신안군(37.1%), 강원도 인제군(49.7%)임.

〈표 3-21〉 문화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지역 구분	평균 접근시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군	26.0	82.9
도농복합시	22.0	90.3
전체 농어촌 시·군	24.0	86.6

- 동·읍·면 구분에 따른 문화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면부 27.2분, 읍부 19.3분, 동 부 8.9분으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
- 문화시설 목표시간 40분 내 도달이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84.1%, 읍부 89.9%, 동부 99.9%로 나타남.

〈표 3-22〉 문화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동·읍·면 구분	평균 접근시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동부	8.9	99.9
읍부	19.3	89.9
면부	27.2	84.1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 문화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139개 중 133개(95.7%)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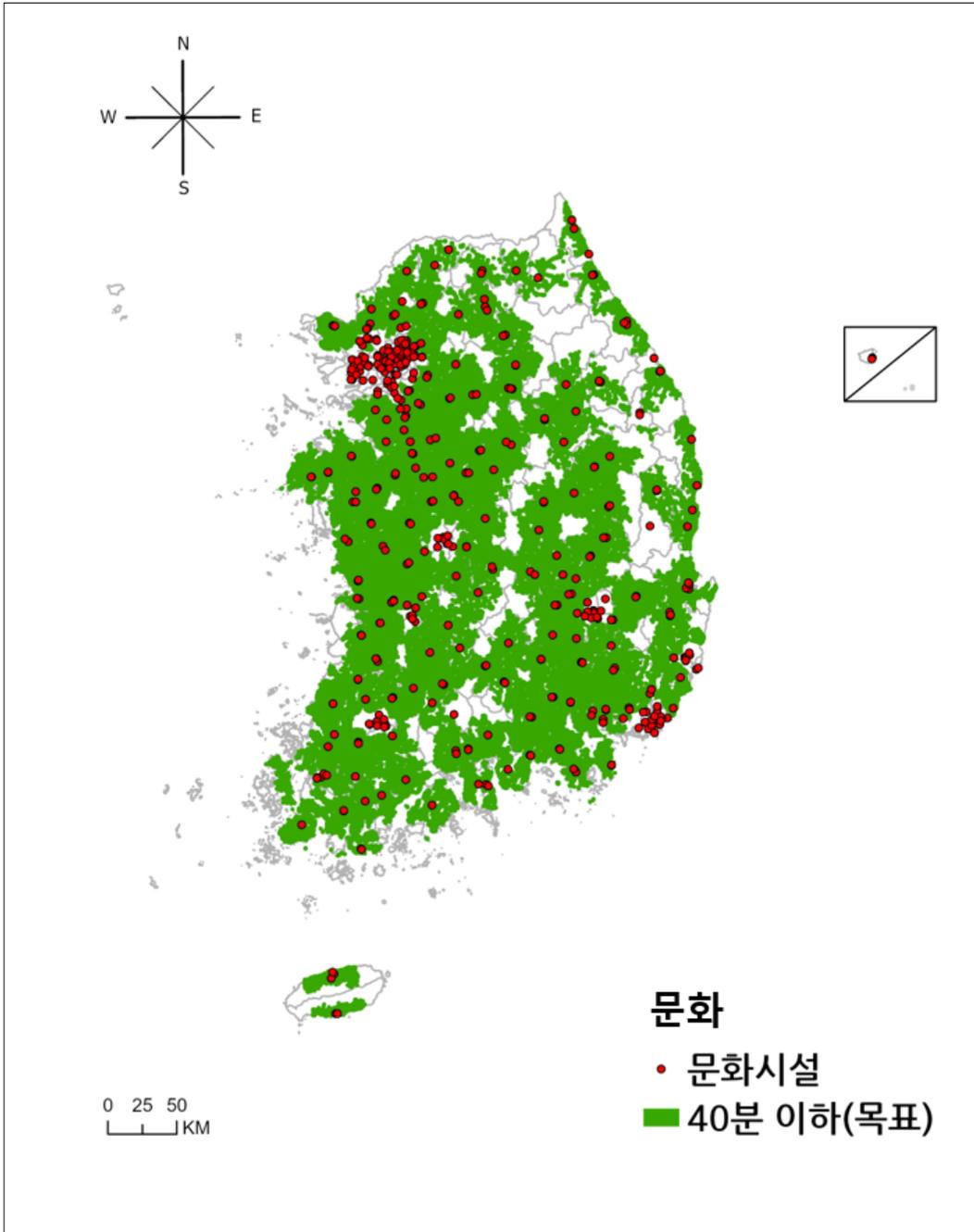
- 군 지역은 82개 중 76개(92.7%) 지역, 도농복합시는 57개(100%)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함.

〈표 3-23〉 문화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지역 구분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76 / 82	92.7
도농복합시	57 / 57	100.0
전체 농어촌 시·군	133 / 139	95.7

〈그림 3-7〉 문화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2.4.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주민 거주지와 도서관 간의 접근성을 측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도서관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0분 이하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위치 정보를 활용함.
 - 전국 도서관(국·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 8,135개의 도서관 주소자료를 지리정보 형태로 구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에서 도서관까지 자동차로 소요되는 접근시간은 평균 9.7분으로 목표시간 내에 도서관 접근이 가능함.
 - 전체 농어촌 시·군 139개 중 82개(59.0%) 지역은 10분 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음.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농어촌 시·군 중 군 지역 평균 11.3분, 도농복합시 평균 8.0분으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도서관에 접근하는 데 3.3분 더 소요됨.
- 농어촌 시·군 주민 거주지 62.7%는 10분 내 도서관 이용이 가능함.
 - 도서관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군 지역 54.2%, 도농복합시 71.1%로 나타남.

- 도서관 목표시간 1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3.1%), 대구광역시 군위군(13.7%), 충청북도 단양군(14.4%), 전라남도 장흥군(18.1%), 전라남도 해남군(22.2%) 순임.

〈표 3-24〉 도서관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지역 구분	평균 접근시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군	11.3	54.2
도농복합시	8.0	71.1
전체 농어촌 시·군	9.7	62.7

○ 동·읍·면 구분에 따른 도서관 접근성 분석 결과, 면부 11.2분, 읍부 6.8분, 동부 3.4분으로 면 지역은 10분 내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도서관 목표시간 10분 내 도달이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54.0%, 읍부 79.8%, 동부 95.2%로 나타남.

〈표 3-25〉 도서관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동·읍·면 구분	평균 접근시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동부	3.4	95.2
읍부	6.8	79.8
면부	11.2	54.0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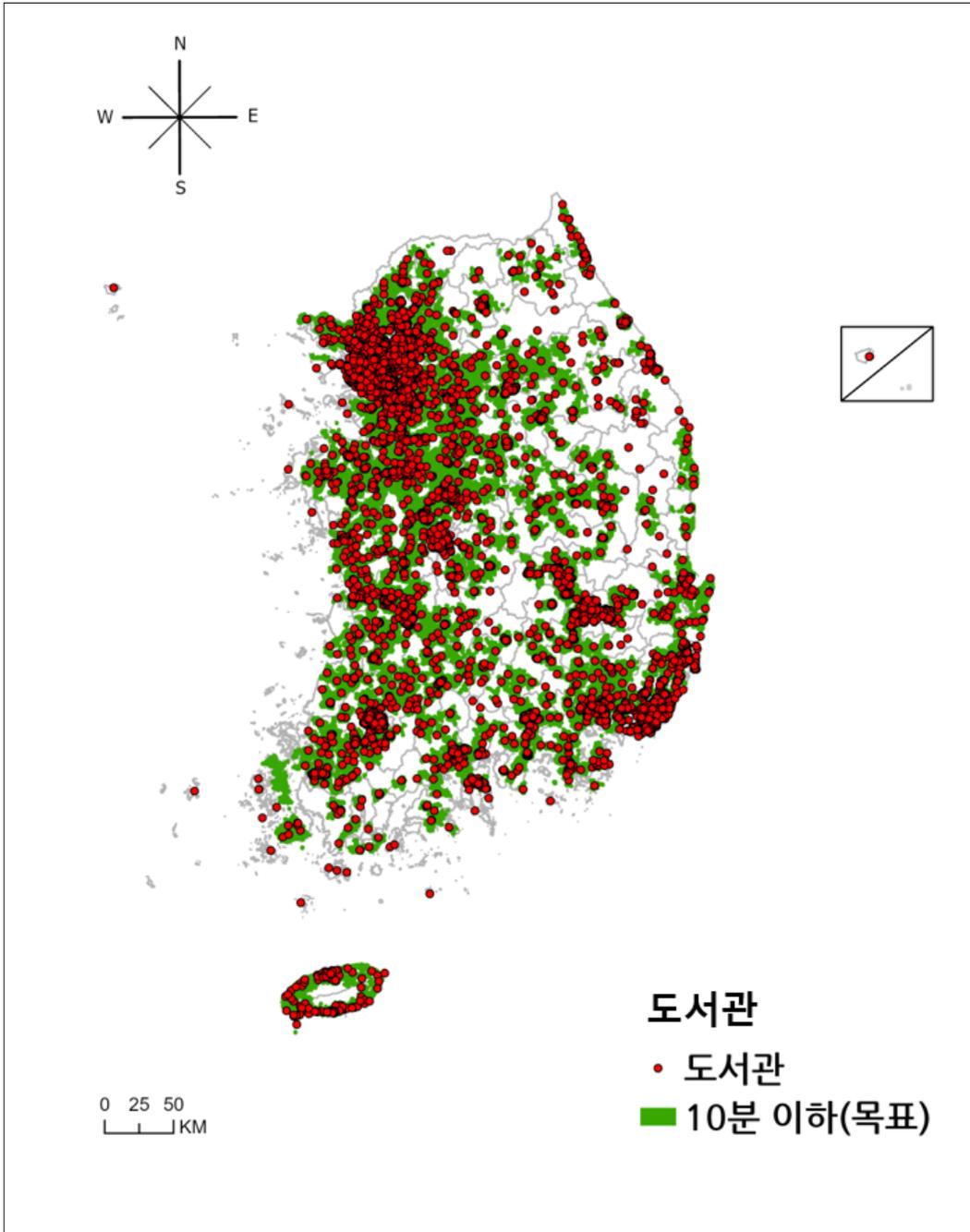
- 도서관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139개 중 82개(59.0%) 지역임.
 - 군 지역은 82개 중 38개(46.3%) 지역, 도농복합시는 57개 중 44개(77.2%) 지역은 목표시간(10분) 내 도서관 접근 가능함.

〈표 3-26〉 도서관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지역 구분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38 / 82	46.3
도농복합시	44 / 57	77.2
전체 농어촌 시·군	82 / 139	59.0

〈그림 3-8〉 도서관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2.5.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주민 거주지와 체육시설 간의 접근성을 측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차량 이동 시(평균속도 32.2km/h) 체육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내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주민 거주지 위치 정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간이운동장) 주소자료를 활용함.
 - 전국 체육시설 2,071개의 주소를 지리정보 형태로 구축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였으며, 동네 간이 체육시설은 소규모, 관리 문제 등으로 점검·평가에서 제외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에서 체육시설까지 소요되는 접근시간은 평균 15.8분으로, 목표시간(30분) 내 도달이 가능함.
 - 전체 농어촌 시·군 139개 중 138개(99.3%) 지역은 30분 내 체육시설에 접근이 가능함.

나. 접근시간 세부 분석

- 전체 농어촌 시·군 중 군 지역은 16.7분, 도농복합시는 15.0분으로 군 지역이 도농복합시보다 체육시설 접근하는 데 1.7분 더 소요됨.
- 농어촌 지역에서 체육시설을 3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88.7%임.
 -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은 군 지역 87.4%, 도농복합시 90.0%로 나타남.
 - 체육시설 목표시간 3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주민 거주지 비율이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옹진군(39.4%), 경상북도 울진군(53.1%), 강원도 삼척시(55.1%), 경상북도 청송군(57.6%) 순임.

〈표 3-27〉 체육시설 항목의 지역별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지역 구분	평균 접근시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군	16.7	87.4
도농복합시	15.0	90.0
전체 농어촌 시·군	15.8	88.7

○ 동·읍·면 구분에 따른 체육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면부 18.4분, 읍부 10.7분, 동부 6.3분으로 나타남.

○ 체육시설 목표시간 30분 내 도달이 가능한 주민 거주지 비율은 면부 85.6%, 읍부 95.4%, 동부 99.9%로 나타남.

〈표 3-28〉 체육시설 항목의 동·읍·면부 평균 접근시간 및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단위: 분, %

동·읍·면 구분	평균 접근시간	서비스기준 충족 주민 거주지 비율
동부	6.3	99.9
읍부	10.7	95.4
면부	18.4	85.6

주: 농어촌서비스기준 대상 139개 시·군 내의 동·읍·면 지역임.

다. 시·군 이행실태 분석

○ 체육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139개 중 138개(99.3%)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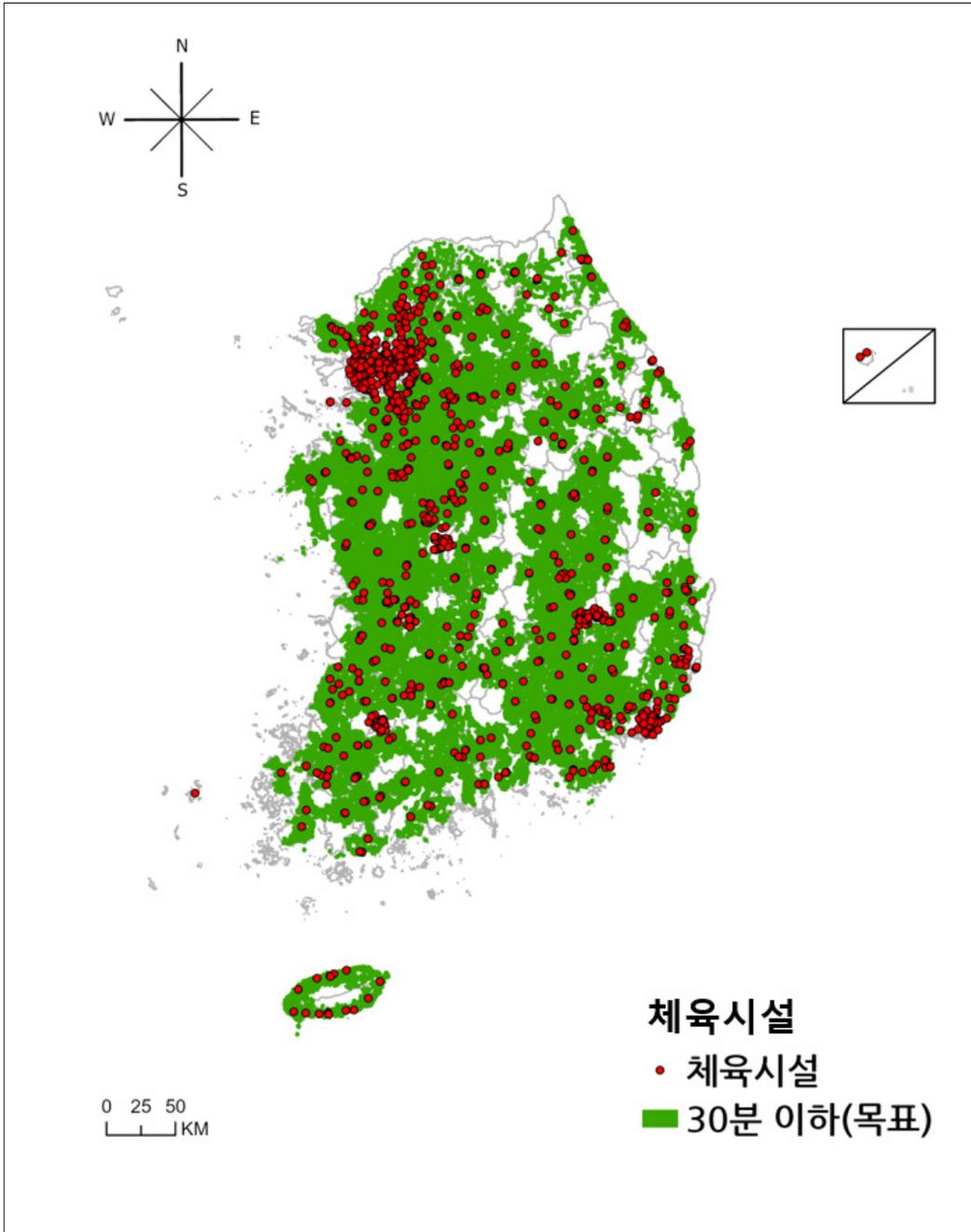
-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군 지역 82개 중 81개(98.8%), 도농복합시 57개 중 57개(100%) 지역임.

〈표 3-29〉 체육시설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단위: 개, %

지역 구분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81 / 82	98.8
도농복합시	57 / 57	100
전체 농어촌 시·군	138 / 139	99.3

〈그림 3-9〉 체육시설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2.3. 정주여건 부문

2.3.1. 주택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2014년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물량 대비 2023년까지의 농어촌에서 철거한 슬레이트 주택 철거물량 비율을 계산함.
 - ‘ $(2014\text{년부터 } 2022\text{년까지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 수}) / 2014\text{년 슬레이트 주택 수} \times 100$ ’이 23% 이상이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최저주거기준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농어촌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주택 현황 점검이 불가함.

- (점검 자료) 환경부 협조를 받아 농어촌 시·군별 슬레이트 주택 철거 실적 통계 자료를 통해 구축함.
 - 2014년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수는 시·군별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관계로, 2014년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철거된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수(누적)로 산출함.
 - 2020년 점검 시 환경부 자료 구득 불가로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표제부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집계했으나 2021년부터는 환경부 협조로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 실적 자료를 구득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점검 결과) 주택 항목의 이행실태 분석 결과 38.4%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 2014년 기준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는 총 701,396호이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 지역에서 철거한 지역 슬레이트 소재 주택 처리 물량은 269,201호임.

〈표 3-30〉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철거 사업 실적

단위: 호

구분	2015~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누적 철거실적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물량	147,022	35,802	32,302	28,865	25,210	269,201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농어촌 지역의 주택 항목 이행실태는 38.4%이며,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한계로 농어촌 시·군별 현황 분석이 불가함.

2.3.2.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 대비 지방 및 광역 상수도 급수 인구로 산출함.
 - ‘(면 지역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 인구 /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이 85% 이상이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환경부 ‘2022 상수도 통계’ 자료 내 급수인구현황의 지역 총인구(행정구역 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 포함))와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를 활용함.
- (점검 결과) 농어촌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82.8%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전국 상수도 보급률(99.4%)과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 간 차이가 16.6%p로 여전히 크기 때문에 상수도 취약지역에 대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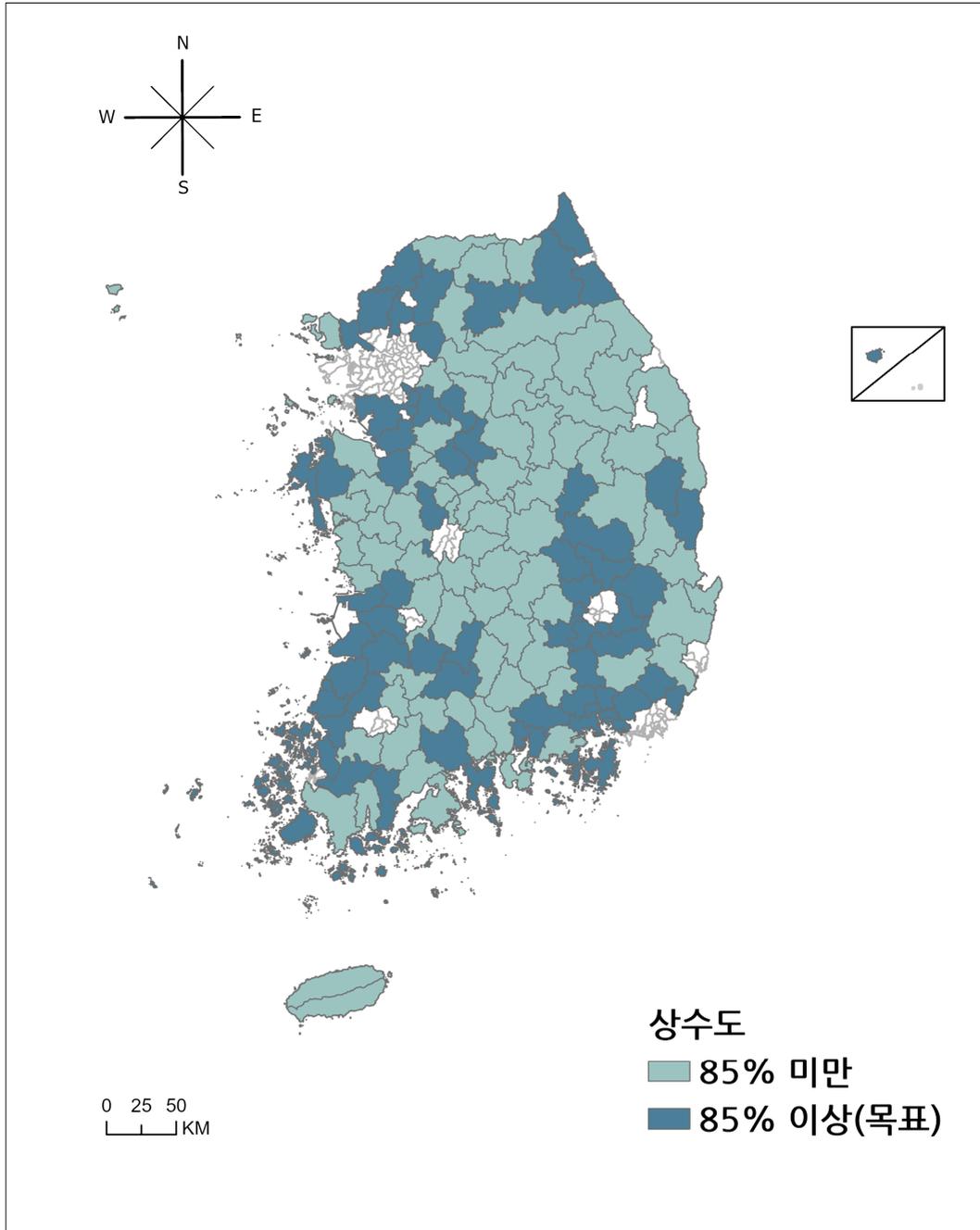
- 2022년 기준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는 465만 명,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는 약 385만 명으로,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82.8%임.
 - 군 지역 내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7.8%, 도농복합시 내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86.8%임.
- 목표 달성 지역은 농어촌 시·군 139개 중 70개(50.4%) 지역임.
 - 군 지역의 43.9%(82개 중 36개)와 도농복합시의 59.6%(57개 중 34개)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함.

〈표 3-31〉 상수도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 구분	상수도 보급률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77.8	36 / 82	43.9
도농복합시	86.8	34 / 57	59.6
전체 농어촌 시·군	82.8	70 / 139	50.4

〈그림 3-10〉 상수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3.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군 지역의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로 이행실태를 점검함.
 - '(군 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 군 지역 총인구) × 100'의 결과값이 76% 이상이면 목표치를 달성함.
- (점검 자료) 환경부가 공표한 '2022 하수도 통계'를 이용함.
 - 군 지역의 총인구 및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자료를 집계하여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 보급률을 산출함.
- (점검 결과)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76.6%로, 목표치(76%)를 달성함.
 - 그러나 목표치를 달성한 곳이 82개 군 지역 중 39개(47.6%)에 불과하여 달성도가 저조한 지역에 하수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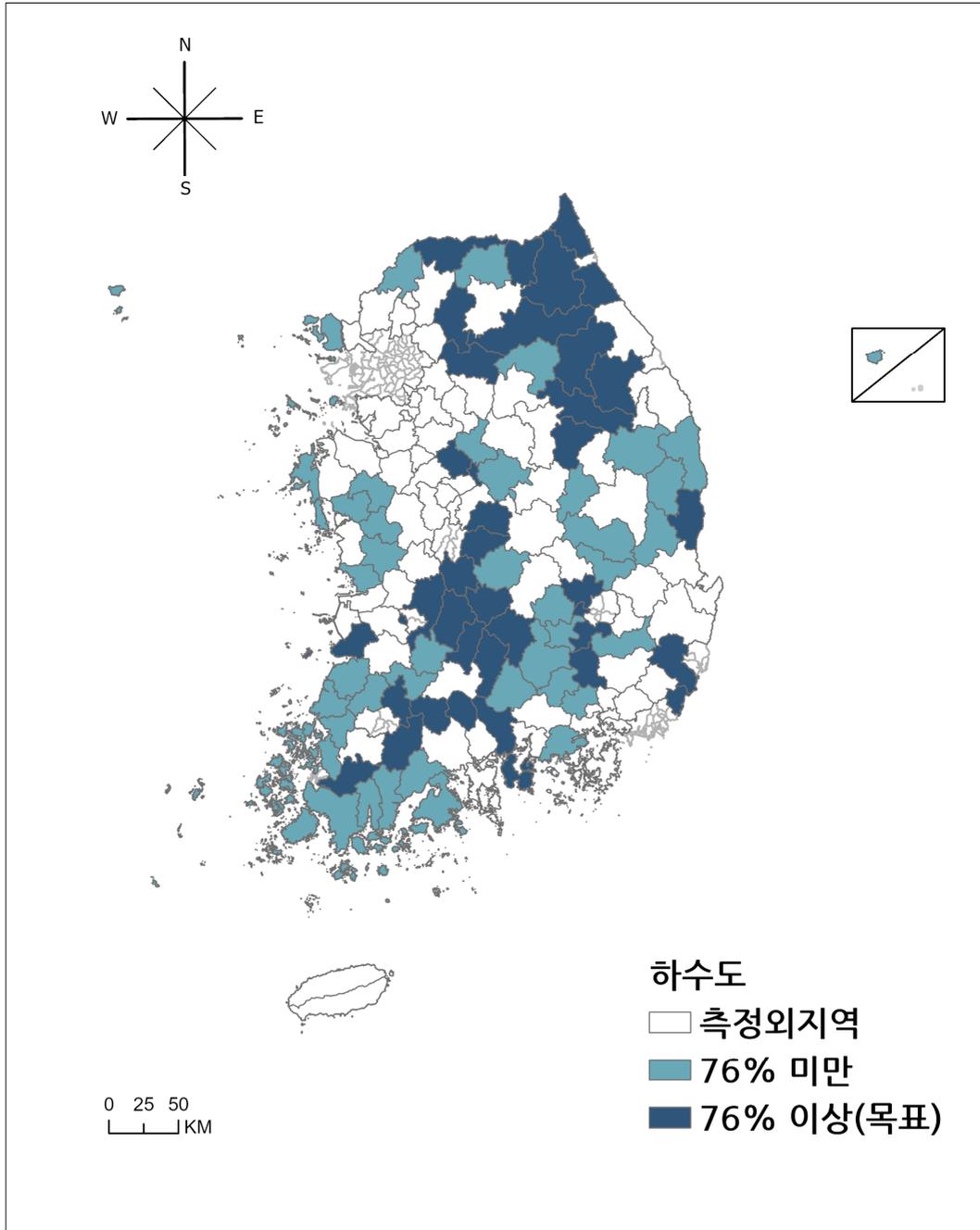
- 전체 군 지역 인구 4,399,660명 중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3,370,777명으로, 이에 따른 이행실태는 76.6%로 나타남.
 - 목표치를 달성한 군 지역은 82개 중 39개(47.6%) 지역이며, 과반(52.4%)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2〉 하수도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 구분	하수도 보급률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76.6	39 / 82	47.6

〈그림 3-11〉 하수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4.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산출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읍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 세대수 / 읍 지역 주민등록세대수) × 100'의 결과값이 68% 이상이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협조로 '2022 전국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를 구득하여 '주민등록세대수', '가정용 수요가수',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를 활용함.
 - 읍 지역이 없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남도 거제시는 집계에서 제외함.
 - 정부는 농어촌 지역 중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하는 LPG소형저장탱크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구득하여 읍·면 도시가스 미보급세대 중 LPG소형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을 보완 지표로 활용함.
- (점검 결과)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72.7%로, 목표치(68%)를 초과 달성함.
 -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어려운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수혜 가구는 13,748세대로, 미보급 세대의 0.55%에 불과함.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분석 대상인 읍이 있는 농어촌 136개 시·군의 읍 지역 주민등록세대수는 약 228만 호, 이 중 도시가스 보급 세대 수가 166만 호 정도로, 농어촌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2.7%임.

- 군 지역 이행실태는 64.8%, 도농복합시 이행실태는 79.1%임.

○ 136개 시·군 중 50개(36.8%)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과반이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군 지역은 81개 중 23개(28.4%), 도농복합시는 55개 중 27개(49.1%)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함.

〈표 3-33〉 난방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 구분	도시가스 보급률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64.8	23 / 81	28.4
도농복합시	79.1	27 / 55	49.1
전체 농어촌 시·군	72.7	50 / 136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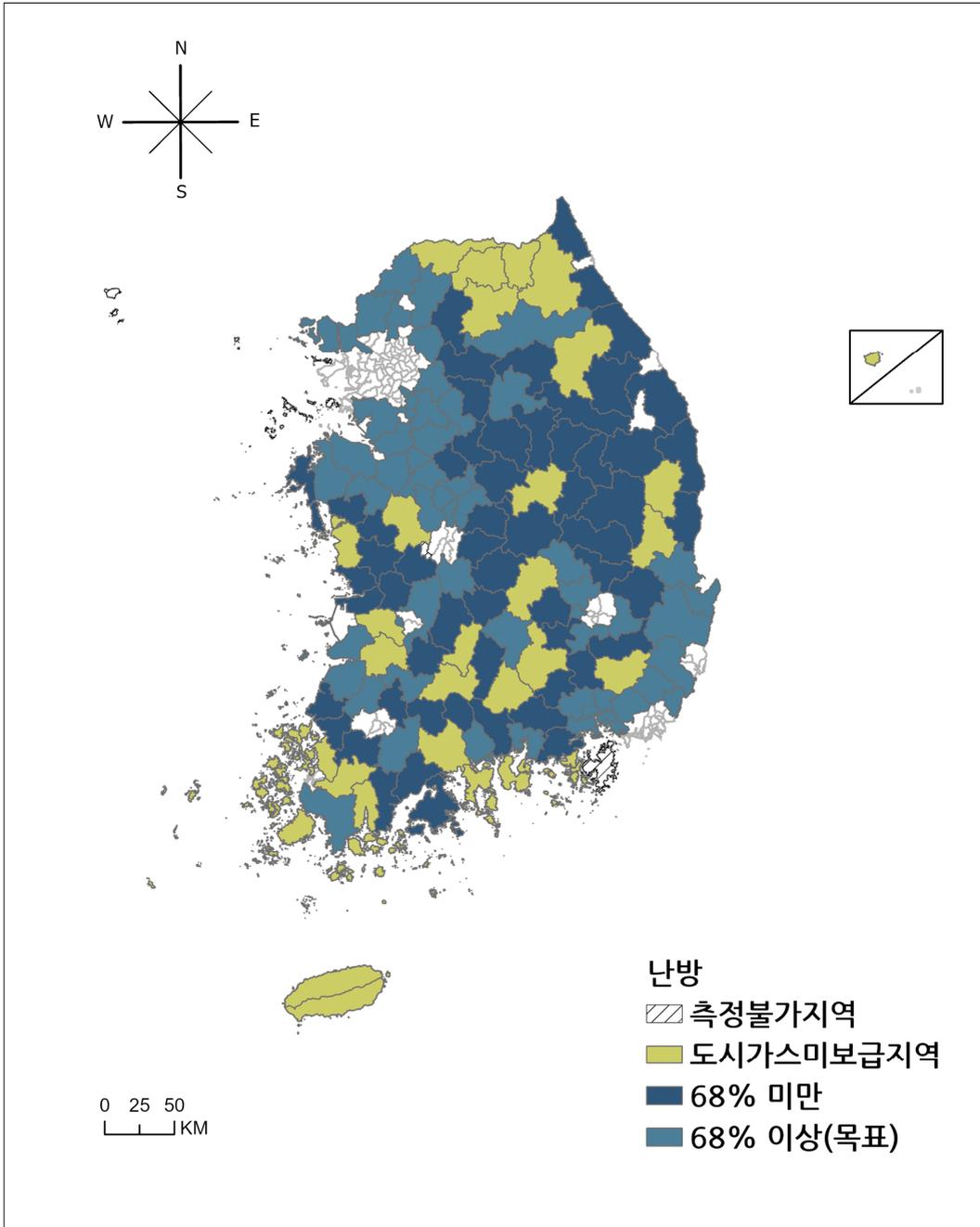
주: 농어촌 시·군 중 읍 지역이 있는 136개 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임.

○ 산업통상자원부 ‘2022 시·군별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읍·면부 도시가구 미보급세대 수 중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을 보완지표로 제시함.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가구 수 / (읍·면 지역 총 가구 수 -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가구 수)} × 100’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함.

○ 농어촌 읍·면부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는 약 249만 세대이며, 이 중 13,748가구에 LPG 소형저장탱크가 공급되고 있어 읍·면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은 약 0.6%임.

〈그림 3-12〉 난방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5.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대중교통 항목은 농어촌 법정리 중 하루 3회 이상 버스 운행이 가능한 마을을 파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이행실태 점검은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법정리 수 / 총 법정리 수) × 100’이 100%인 경우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대중교통 이행실태는 농어촌 시·군 내 모든 법정리의 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3회 이상이면 해당 시·군은 대중교통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받아 1일 왕복 1회 이상 여객선을 운항하는 도서 지역을 조사하여 대중교통 항목의 보완지표로 활용함.
- (점검 자료) 민간기업의 대중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민간기업¹²⁾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전국 버스노선 정보를 반영한 버스정류장 정보를 구축하고 법정리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별 버스 운행 횟수를 파악함.
 - 버스노선 정보는 전국 26,581개의 시내·마을·농어촌·광역버스 노선 데이터 및 각 노선이 경유하는 버스정류장 세부 정보, 배차 간격, 기·종점 정보를 포함함.
 - 버스정류장 정보는 전국 1,191,112개의 버스 정류장별 버스노선 데이터 및 버스정

12) ㈜아로정보기술은 2022년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빅데이터거래스에 대중교통 데이터를 제공함. 2023년부터는 데이터 제공 계약 종료로 버스노선 및 버스정류장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음.

류장의 세부 위치, 경유 노선버스 등의 정보를 포함함.

-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정류장 정보와 노선별 배차 간격, 버스정류장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버스 정류장별 경유 버스노선과 정차 횟수를 분석함.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15,160개 법정리의 공간 자료와 일별 운행 횟수를 적용한 버스 정류장별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항목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시·군의 전체 법정리 중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 비율은 89.2%로, 목표치(100%)에 미달함.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농어촌 시·군 내 15,160개 법정리 중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 수는 13,530개로, 이에 따른 이행실태는 89.2%임.

- 군 지역 내 8,766개 법정리 중 7,701개(87.9%)에서, 도농복합시 내 6,394개 법정리 중 5,829개(91.2%)에서 1일 3회 이상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4〉 대중교통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 구분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 가능	
	법정리 비율	법정리 수
군	87.9	7,701 / 8,766
도농복합시	91.2	5,829 / 6,394
전체 농어촌 시·군	89.2	13,530 / 15,160

○ 전체 139개 농어촌 시·군 중 법정리 내에서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5개(3.6%) 지역임.

- 군 지역 82개 중 2개 지역(2.4%), 도농복합시 57개 중 3개 지역(5.3%)이 목표치(100%)를 달성함.

〈표 3-35〉 대중교통 항목의 서비스기준 충족 시·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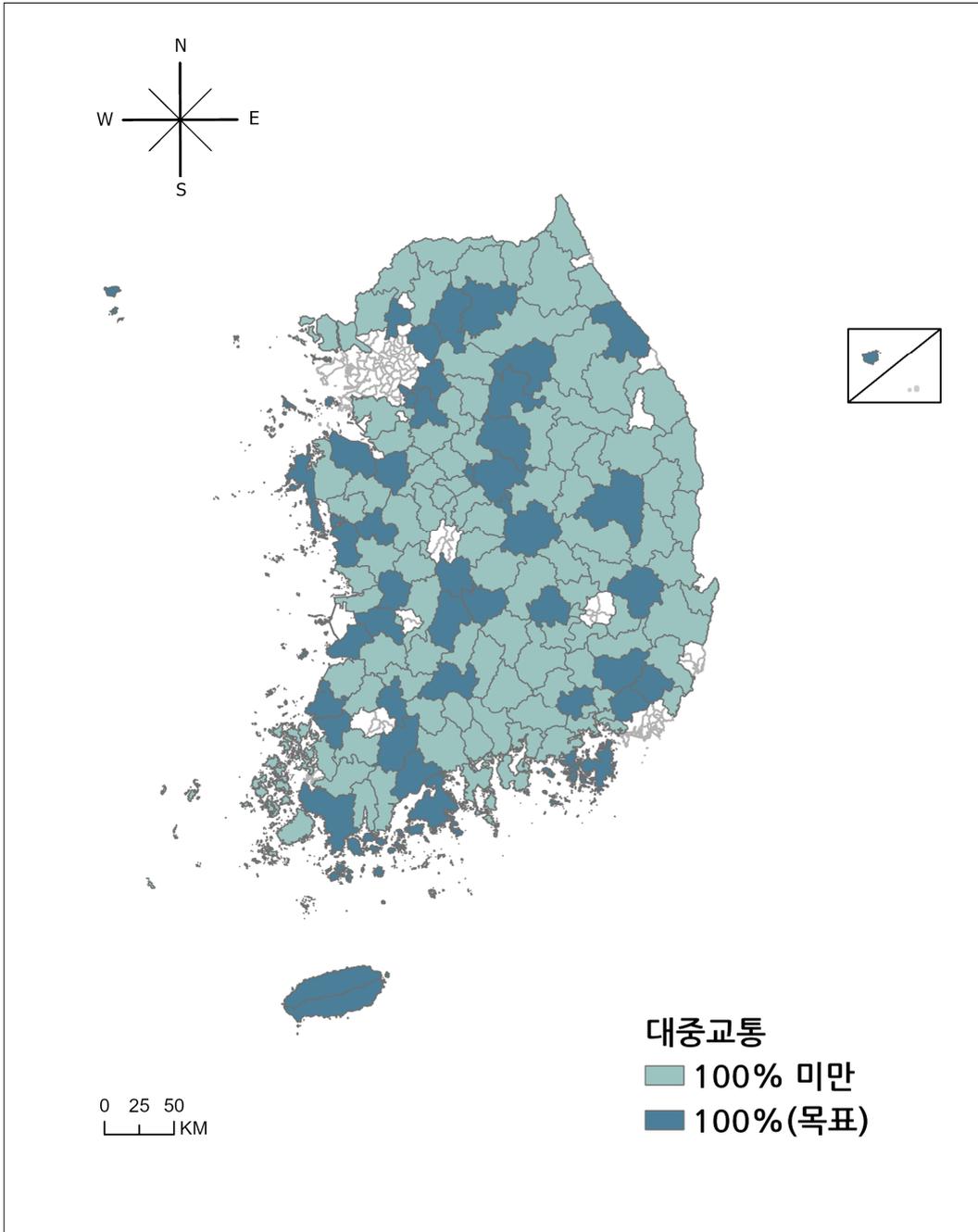
단위: %, 개

지역 구분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 가능	
	시·군 비율	시·군 수
군	2.4	2 / 82
도농복합시	5.3	3 / 57
전체 농어촌 시·군	3.6	5 / 139

○ 도서지역의 여객선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도서 여객선 이용실적’ 자료에 따른 본도 총 32개 중 1일 왕복 1회 이상 여객선을 운항하는 곳은 31개(96.9%)임.

- 행정기관이 위치한 본도가 포함되어있는 도서 지역은 총 12개 시·군(군 지역 8개, 도농복합시 4개)임.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신안군, 경상남도 통영시, 제주도 제주시, 제주도 서귀포시 등임.

〈그림 3-13〉 대중교통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6. 생활폐기물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 읍·면 비율 및 생활폐기물처리장 설치 행정리 비율을 각각 집계하여 산출함.
 - 영농폐기물 이행실태는 ‘(영농폐기물집하장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의 결과값이 100%이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생활폐기물 이행실태는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의 결과값이 100%이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영농폐기물 점검 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와 환경부 협조자료를 활용함. 생활폐기물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자료 및 지자체 행정조사 자료를 활용함.
 -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협조로 구득한 2023년 기준 전국 10,163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의 주소자료를 가공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 설치된 읍·면 수를 집계함.
 - * 2022년 측정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제공 자료를 이용했으나 '23년에는 환경부 협조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함.
 -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마을 내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수를 조사하여 집계함.

- (점검 결과) 영농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모두 목표치(100%)에 미달함.
 - 영농폐기물 이행실태는 80.7%, 생활폐기물 이행실태는 26.7%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영농폐기물) 전체 1,411개 읍·면 중 1,138개 읍·면에 영농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 영농폐기물 이행실태는 80.7%로 나타남.

- 군 지역 이행실태는 85.1%, 도농복합시 이행실태는 74.3%임.
- 82개 군 지역 중 목표 달성 지역은 44개(53.7%)였으며, 도농복합시는 57개 지역 중 15개(26.3)만이 목표치를 달성함.

〈표 3-36〉 생활폐기물(세부: 영농폐기물)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 구분	설치 읍·면 비율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85.1	44 / 82	53.7
도농복합시	74.3	15 / 57	26.3
전체 농어촌 시·군	80.7	59 / 139	42.4

○ (생활폐기물) 전체 37,892개 행정리 중 10,133개 행정리에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른 이행실태는 26.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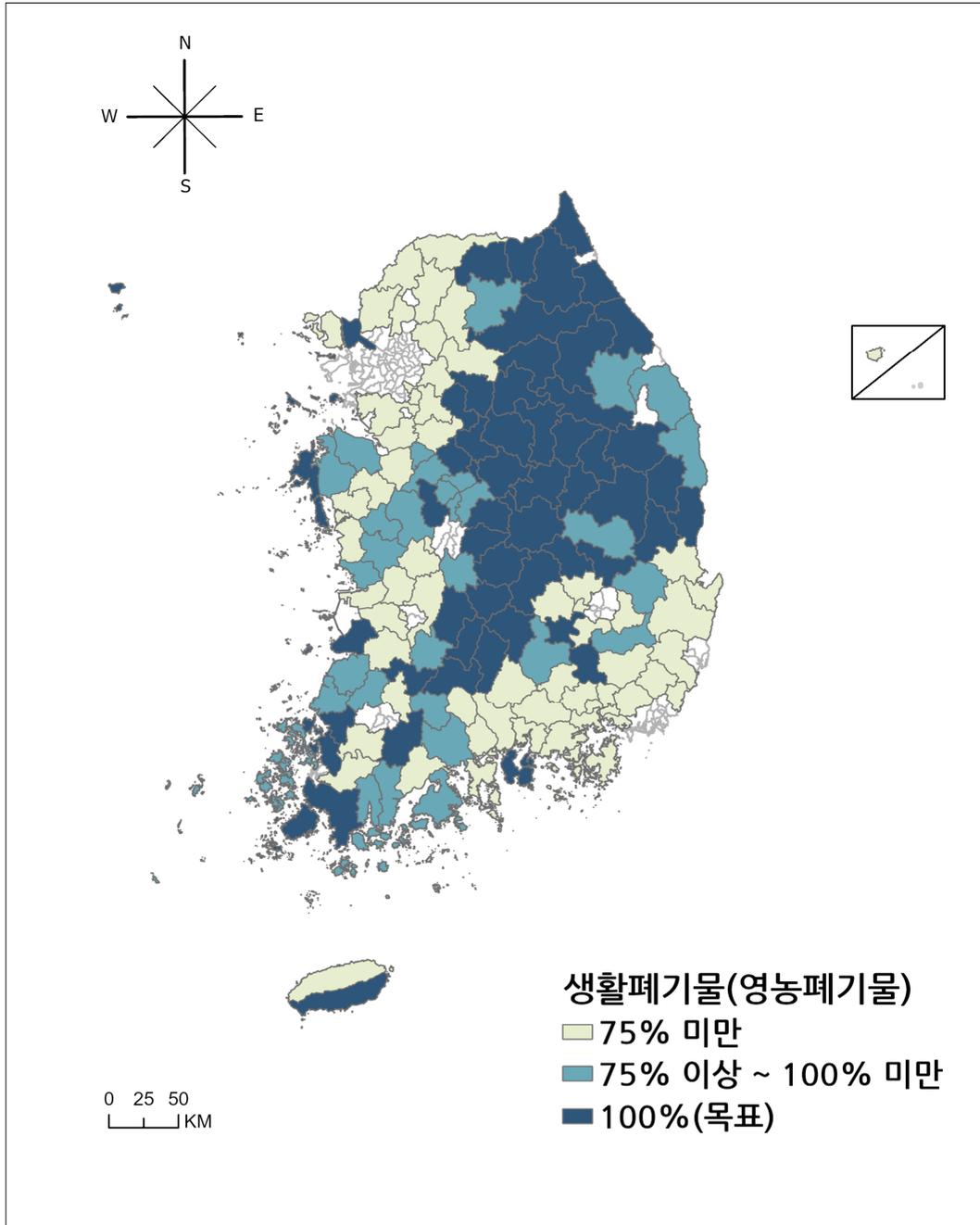
- 군 지역 이행실태는 28.7%, 도농복합시 이행실태는 24.4%에 불과함.
- 82개 군 지역 중 5개(6.1%) 지역, 57개 도농복합시 중 5개(8.8%) 지역만이 목표치를 달성함.

〈표 3-37〉 생활폐기물(세부: 생활폐기물)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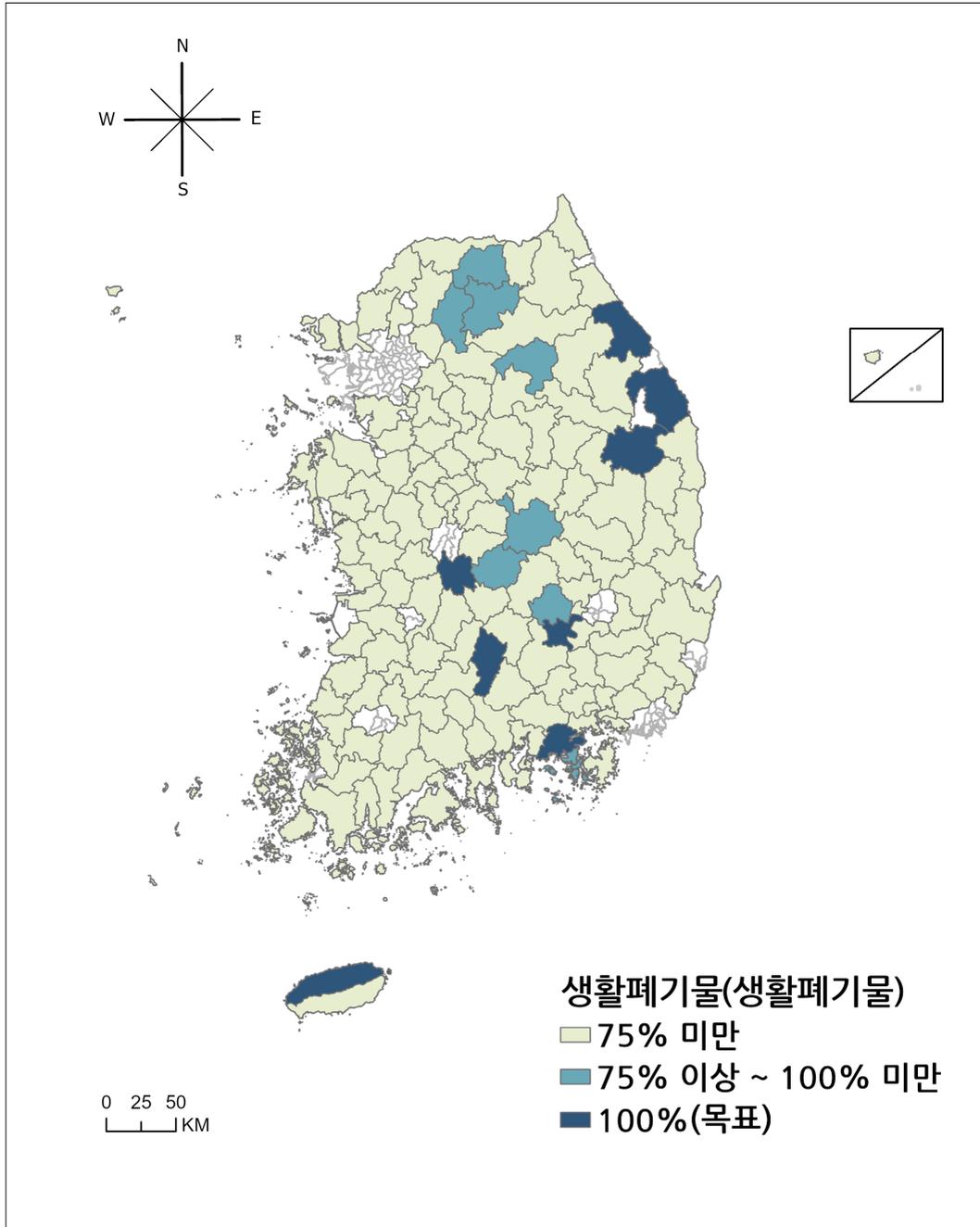
지역 구분	설치 행정리 비율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28.7	5 / 82	6.1
도농복합시	24.4	5 / 57	8.8
전체 농어촌 시·군	26.7	10 / 139	7.2

〈그림 3-14〉 생활폐기물 항목(영농폐기물)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그림 3-15〉 생활폐기물 항목(생활폐기물)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7.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총 행정리 중 방법용 CCTV가 설치된 비율을 산출함.
 - ‘(방법용 CCTV가 설치된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이 60% 이상이면 목표치(60%)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와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함.
 -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별 행정리 수를 집계하고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설치 행정리 수를 조사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 방법용 CCTV 설치율은 75.4%로 목표치(60%)를 달성함.
 - 방법용 CCTV가 설치율이 60% 이상인 곳은 105개 시·군(75.5%)임.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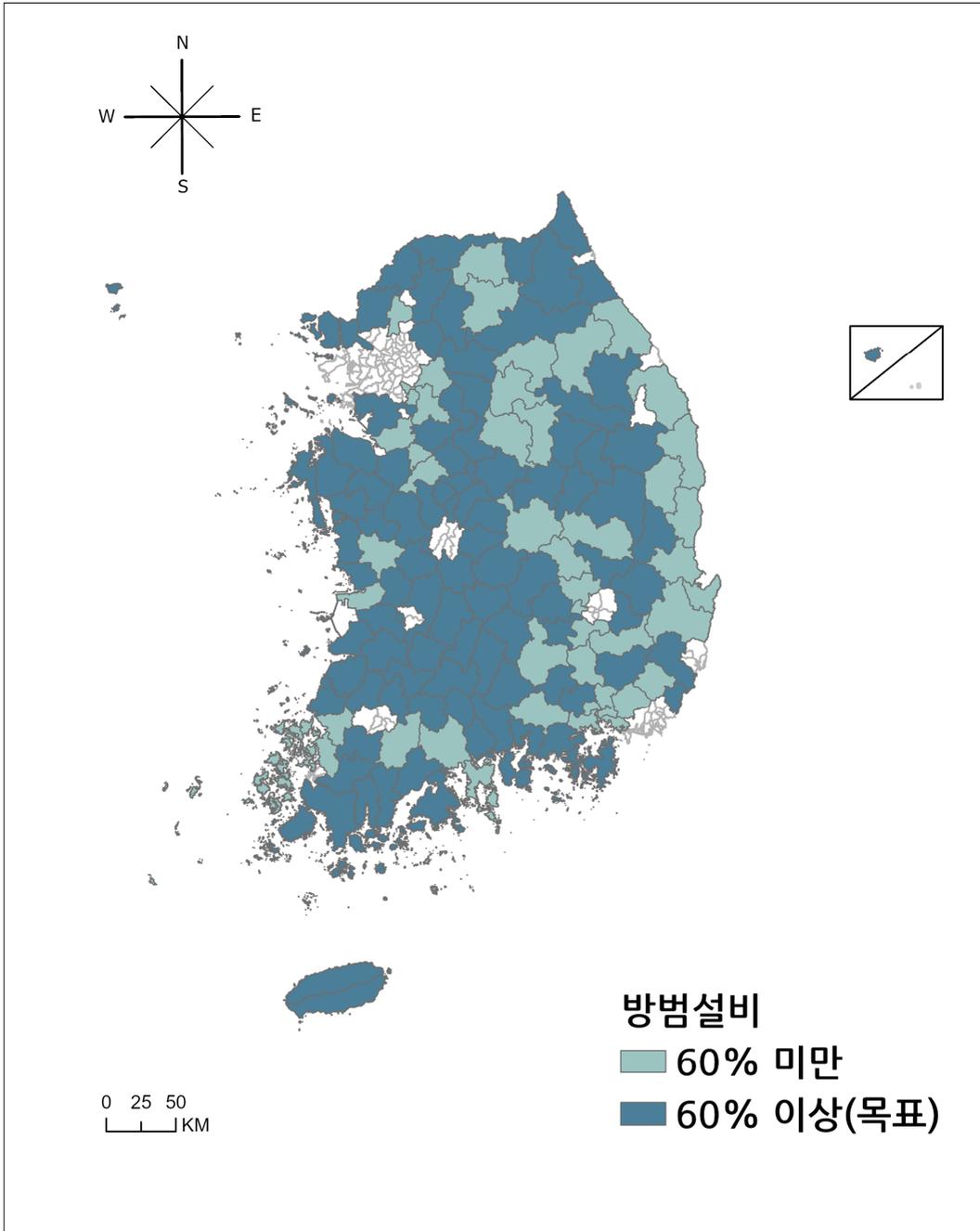
- 농어촌 139개 시·군의 37,892개 행정리 중 28,569개에 방법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이행실태는 75.4%임.
 - 군 지역 이행실태는 77.9%, 도농복합시는 72.2%로 나타남.
 - 군 지역의 81.7%(82개 중 67개), 도농복합시의 66.7%(57개 중 38개)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함.

〈표 3-38〉 방법설비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 구분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비율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77.9	67 / 82	81.7
도농복합시	72.2	38 / 57	66.7
전체 농어촌 시·군	75.4	105 / 139	75.5

〈그림 3-16〉 방법설비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8.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시·군별로 탄력순찰 대상지역에 대해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을 실시하는 비율을 파악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탄력순찰 실시지역 수 / 탄력순찰 대상지역 수) × 100’이 100%인 경우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예를 들면, 탄력순찰 수요자 A가 B지역에 30일, 수요자 C가 D지역에 20일간 탄력순찰을 요청했을 때, 경찰이 B지역에 대해 20일, D지역에 대해 10일간 탄력순찰을 실시하는 경우, 이때 이행실태는 $60\%((20+10)/(30+20))$ 로 계산함.
 - *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인 탄력순찰 제도는 지역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하여 요청된 시간 및 장소에 대해 112신고량을 분석한 후 우선순위·순찰주기를 결정해 순찰 계획에 반영함.
- (점검 자료) 경찰청 협조로 탄력순찰 대상 지역 수와 탄력순찰 실시지역 수, 탄력순찰 이행률 현황 자료를 구득하여 이행실태를 측정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지역의 탄력순찰 대상지역에 대해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을 실시하는 비율은 98.2%로, 목표치(100%)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임.
 - 139개 농어촌 시·군 중 목표 달성 지역은 36개(25.9%)임.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139개 농어촌 시·군의 탄력순찰 대상 장소는 총 4,827,743개이며, 이중 4,739,315개에 대해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을 실시해 이행실태는 98.2%임.

- 군 지역은 탄력순찰 대상 장소 1,823,025개 중 1,791,107개에, 도농복합시는 탄력순찰 대상 장소 3,004,718개 중 2,948,208개에 대해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을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각각의 이행실태는 98.2%, 98.1%임.

○ 전체 농어촌 중 목표치(100%)를 달성한 시·군 수는 36개(25.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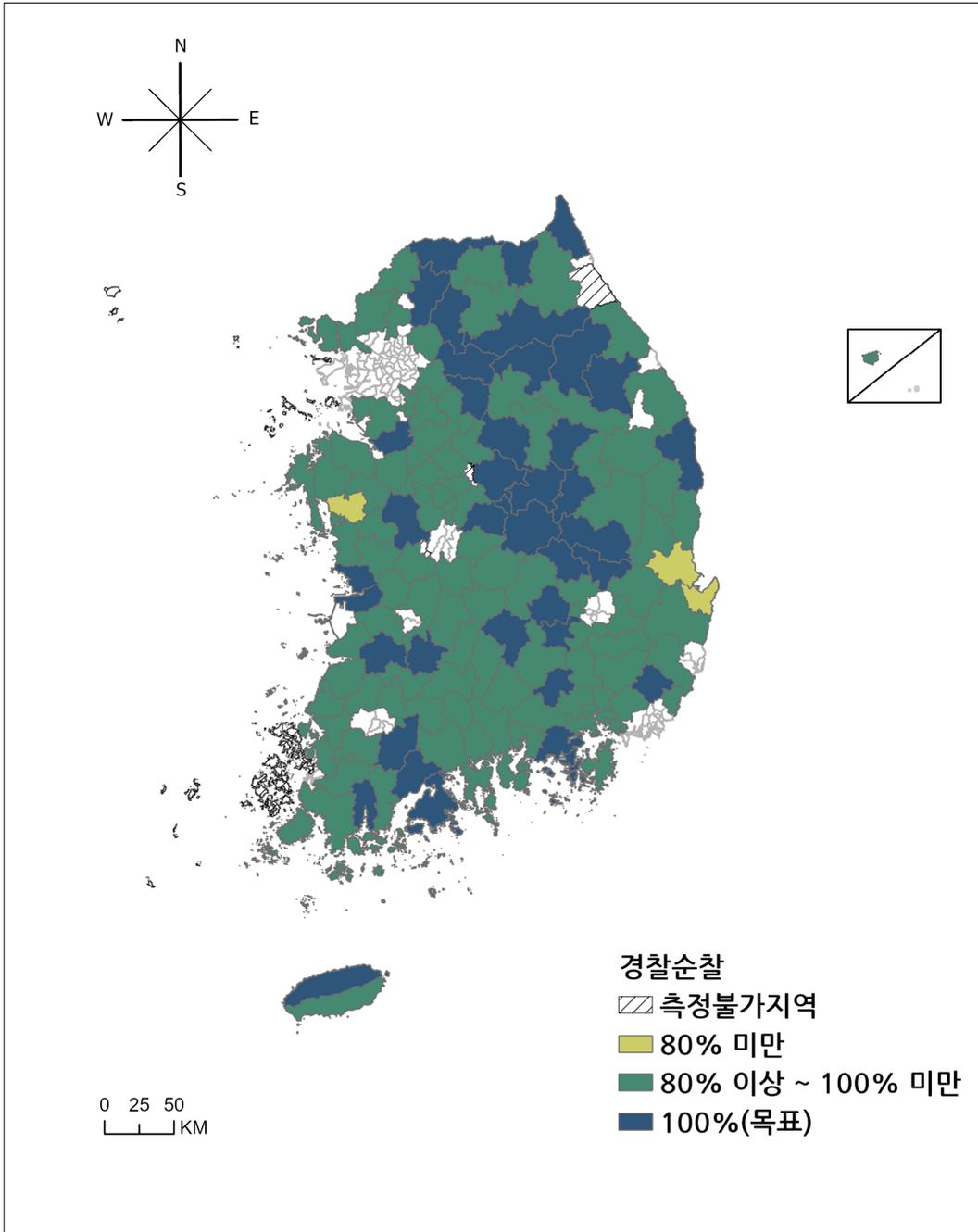
- 군 지역 21개 지역(25.6%), 도농복합시 15개 지역(26.3%)이 목표치를 달성함.

〈표 3-39〉 경찰순찰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 구분	탄력순찰 이행률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98.2	21 / 82	25.6
도농복합시	98.1	15 / 57	26.3
전체 농어촌 시·군	98.2	36 / 139	25.9

〈그림 3-17〉 경찰순찰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3.9.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출동 건별 화재 신고 접수 후 출동 건별로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 여부를 파악해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 건수 / 총 출동 건수) × 100'이 70% 이상이면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농어촌은 지리적 특성, 인프라 여건 등으로 인하여 '화재 출동 5분 이내 도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목표시간 7분을 기준으로 기준거리(2.5km) 초과 시 0.5km당 1분씩 목표시간을 추가하는 '지역별 목표시간'을 설정함.
- (점검 자료) 소방청 협조를 받아 화재진압시설에서 화재발생지역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과 이동 거리를 활용하여 지역별 목표시간 달성 여부를 평가함.
 - 출동 건별로 차고에서 화재 현장까지의 이동 거리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별 목표시간을 산출함.
 - 총 38,830건의 소방출동 자료를 확보하여 소방 출동 주소와 가장 가까운 소방서(소방본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에서 화재발생지역까지 소요된 시간 및 거리를 측정함.
- (점검 결과) 농어촌 시·군 내 소방출동 중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도착한 비율은 58.4%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전체 농어촌 시·군 139개 지역 중 소방출동 목표치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33개 지역(23.7%)임.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전체 농어촌 시·군의 2023년 소방출동 건수는 총 22,109건이며, 이 중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한 소방출동 건수는 12,909건으로, 이행실태는 58.4%임.
 - 지역 구분에 따른 이행실태 분석 결과, 군 지역의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 비율은 62.5%, 도농복합시는 54.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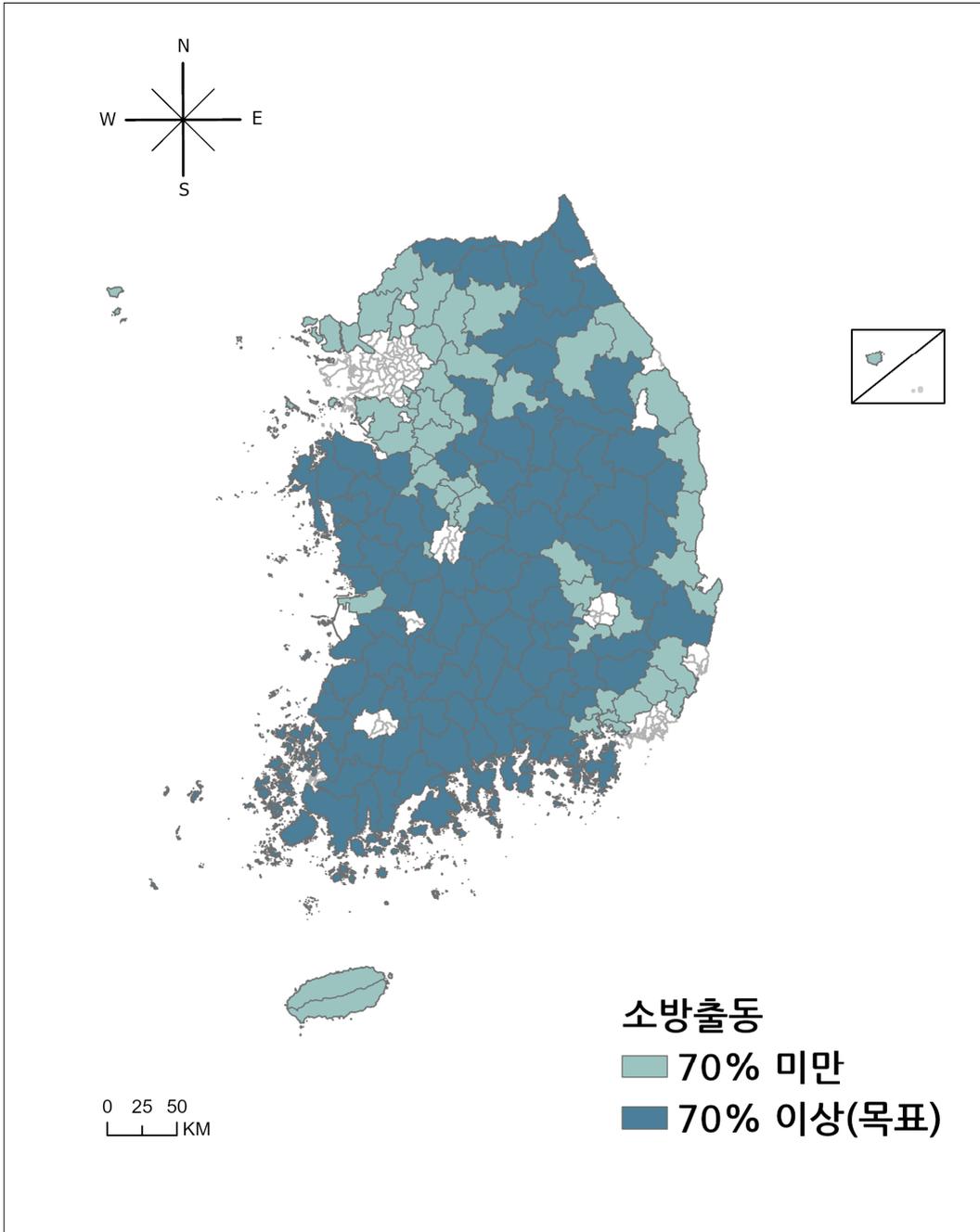
- 전체 농어촌 시·군 중 서비스기준 목표치 70%를 달성한 지역은 33개(23.7%)이며, 106개(76.3%) 지역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함.
 - 군 지역 82개 중 24개(29.3%), 도농복합시 57개 중 9개(15.8%) 지역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0〉 소방출동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 개, %

지역 구분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 비율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62.5	24 / 82	29.3
도농복합시	54.6	9 / 57	15.8
전체 농어촌 시·군	58.4	33 / 139	23.7

〈그림 3-18〉 소방출동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2.4. 경제활동 부문

2.4.1.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가. 점검 방법 및 결과

- (점검 방법) 농어촌 시·군별로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조사하여 연간 1회 이상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시·군 비율이 86% 이상이면 서비스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 (점검 자료)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연간 운영 횟수(대면)’를 파악함.
 - 이와 더불어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와 ‘일자리센터 등 취업 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그리고 ‘창업 및 취업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전담 인력) 수’를 조사함.
- (점검 결과) 연간 1회 이상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어촌 시·군 비율은 87.1%로, 목표치(80%)를 달성함.
 - 보완지표로 제시한 온라인 활용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어촌 시·군은 42곳(30.2%)임.

나. 이행실태 세부 분석

○ 농어촌 지역 139개 중 121개(87.1%) 시·군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을 연간 1회 이상 운영함.

- 군 지역 이행실태는 82.9%, 도농복합시 이행실태는 93.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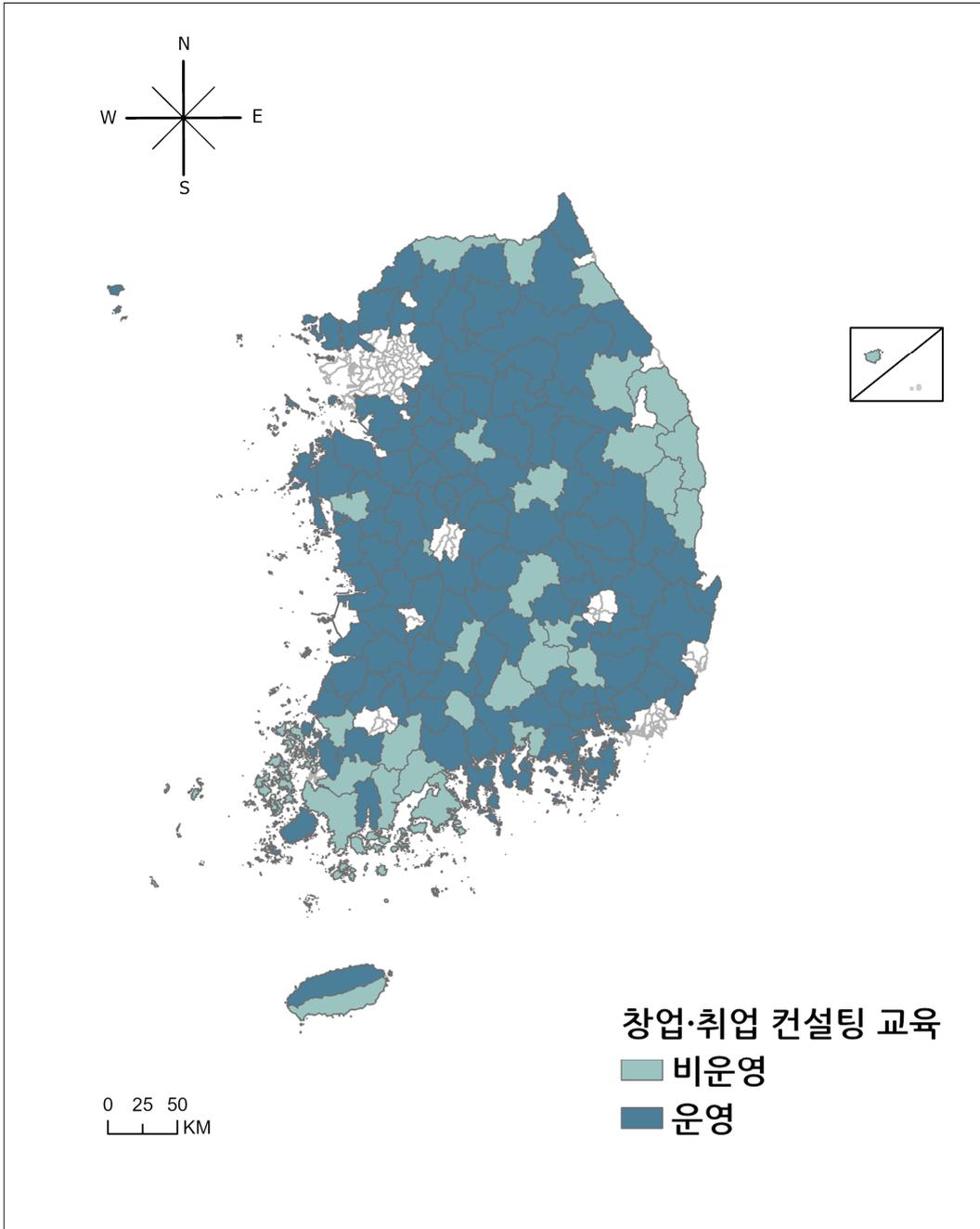
- 온라인 활용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군 지역은 82개 중 23개(28.0%), 도농복합시는 57개 중 19개(33.3%) 지역임.

〈표 3-41〉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 구분	목표 달성 지역	
	시·군 수	시·군 비율
군	68 / 82	82.9
도농복합시	53 / 57	93.0
전체 농어촌 시·군	121 / 139	87.1

〈그림 3-19〉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충족 지역 현황



주: 전체 시·군 중 도시 지역은 제외하고 농어촌 시·군만 표시함.

4

요약 및 향후 계획

1. 이행실태 점검 결과 요약

- 2023년 기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함.
- 특히 2022년 기준 목표 미달성 항목이었던 하수도,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등 2개 항목이 추가로 목표를 달성했고, 총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향상됨.
 -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노인복지는 '21년부터 달성률 100% 유지) 등 2개 항목은 전년도 달성 수준을 유지함.
 - 방법설비, 소방출동 등 2개 항목은 달성 수준이 하락함.
- 세부적으로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기준 목표치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4-1>.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 등 4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고, 전년 대비 달성도도 향상됨.
 - [진료] 주요 4대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차량 이용 평

군 접근 시간이 22.7분으로 나타나 목표치(목표: 30분~1시간 이내)를 달성함.

- [응급의료] 119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 시간은 12.1분(목표: 30분 이내)으로 목표치를 달성함.
- [영유아 보육·교육]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9.1분(목표: 20분 이내)으로 목표치를 달성함.
- [노인복지] 모든 농어촌 시·군이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목표치(목표: 80%)를 달성함.

○ 교육·문화 부문은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등 5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고, 전년 대비 달성도도 향상됨.

- [초·중등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평균 접근 시간은 7.3분으로 목표치(10분 이내)를 달성함.
- [평생교육] 읍·면 내에서 평생교육시설(주민자치센터 포함)을 운영하는 비율이 85.6%로 나타나 목표치(70%)를 달성함.
- [문화]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이 24.0분(목표: 40분 이내)으로 목표치를 달성함.
- [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까지의 평균 접근 시간은 9.7분(목표: 10분 이내)으로 목표치를 달성함.
- [체육시설] 체육시설까지의 접근 시간은 15.8분(목표: 30분 이내)으로 목표치를 달성함.

○ 정주여건 부문에서는 주택, 하수도, 난방, 방범설비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한 반면,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항목은 미달성함.

- [주택]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수는 2014년 대비 38.4%(목표: 23%) 감소하여 목표치를 달성함.
- [하수도]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6%(목표: 76%)로 목표치를 달성함.

- [난방]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2.7%(목표: 68%)로 목표치를 달성함.
 - [방법설비] 방법설비용 CCTV 설치 행정리 비율은 75.4%(목표: 60%)로 목표치를 달성함.
 - [상수도] 면 지역의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2.8%(목표: 85%)로 목표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 비율은 89.2%로 목표치(100%) 이하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집하장이 있는 읍·면 비율은 80.7%,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비율은 26.7%로 목표치(100%) 이하로 나타남.
 - [경찰순찰] 탄력순찰 실시율은 98.2%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목표치(100%)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방출동] 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 현장 도착 비율은 58.4%로, 목표치(70%) 이하로 나타남.
- 경제활동 부문의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은 농어촌 시·군 중 연 1회 이상 취업·창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 비율이 87.1%로, 목표치(86%)를 달성함.

〈표 4-1〉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현황(2020~2023년)

부문	서비스 항목	세부시설(기초 인프라 시설) 및 측정 기준	목표 (’20~’24)	’20년	’21년	’22년	’23년
보건의료·복지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30분~1시간	23.3분	22.7분	23.1분	22.7분 (0.4분↓)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분	20.5분	14.6분	13.8분	12.1분 (1.7분↓)
	영유아보육·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5.8분	9.0분	9.1분	9.1분 (-)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80%	99.3%	100%	100%	100% (-)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7.5분	7.3분	7.4분	7.3분 (0.1분↓)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88.2%	79.1%	84.6%	85.6% (1.0%p▲)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24.7분	24.0분	24.1분	24.0분 (0.1분↓)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10.3분	9.9분	10.0분	9.7분 (0.3분↓)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18.8분	17.0분	16.6분	15.8분 (0.8분↓)

(계속)

부문	서비스 항목	세부시설(기초 인프라 시설) 및 측정 기준	목표 (’20~’24)	’20년	’21년	’22년	’23년
정주여건	주택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23%	7.8%	30.7%	34.8%	38.4% (3.6%p▲)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85%	77.0%	80.6%	81.6%	82.8% (1.2%p▲)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76%	73.3%	74.6%	75.6%	76.6% (1.0%p▲)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68%	68.1%	69.4%	70.0%	72.7% (2.7%p▲)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100%	87.1%	87.3%	89.1%	89.2% (0.1%p▲)
	생활폐기물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영농)100%	66.4%	75.2%	76.9%	80.7% (3.8%p▲)
			(생활)100%	16.7%	18.8%	20.6%	26.7% (6.1%p▲)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60%	64.9%	71.3%	75.9%	75.4% (0.5%p▽)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단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100%	62.9%	90.8%	95.4%	98.2% (2.8%p▲)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72.1%	65.0%	69.1%	58.4% (10.7%p▽)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86%	65.5%	68.8%	77.5%	87.1% (9.6%p▲)	

주 1) 음영 표시는 미달성 항목임.

2) †표시는 접근성 항목에서 전년보다 소요시간이 늘어난 경우, ▲표시는 일반 항목에서 전년보다 달성률이 향상된 경우, ▽표시는 전년보다 달성률이 하락한 경우임.

2. 향후 계획

-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됨. 2025년부터 제5차 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개편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으며, 내년에 2024년도 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는 개편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임.
- 현행 기준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몇 가지 이슈들과 관련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보다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달성도 향상 추이와 현실에서 농어촌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환경 만족도 간 간극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한 개선안 모색도 필요함.
 - 한편으로는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대다수 항목들이 목표치가 달성된 상황에서 농어촌지역의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이 요구됨.
-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기준의 항목 및 기준과 관련하여 시대적 여건과 정책 환경의 변화, 현행 기준의 달성 수준(기 달성 항목) 등을 고려하여 제5차 기본계획 기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구성 항목과 기준 설정 방식, 목표치 등 서비스기준 내용의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정책 환류 또는 정책 연계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현행 제도의 한계와 관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특히 지방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이 축소되고 있는 여건에서 지역의 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그와 더불어 각 지역 내 평균적 달성 수준, 전체 지자체의 평균적 달성 수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현행 점검 방식을 재검토하여 이행실태 점검을 세밀화하고 삶의질향상위원회·부처·지자체 등에 점검 결과를 제시·공유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임.

부 록 1

2023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시·군)

※ 주의 사항 :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치 형태로 작성 요망, 시·군별 1개 파일로 개별 작성 후 시·도에서 파일을 취합, 압축하여 제출
 ※ 답변 작성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061-820-2181)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보건·의료·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시·군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현황	()명	()실·과 성명 : Tel :	년 월
교육·문화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시·군내 비형식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의 수 ※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해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평생교육법)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란, 주민자치센터, 학교 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기관과 관련됨.	()개 읍·면	()실·과 성명 : Tel :	년 월

부분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p>1. 시·군내 마을 인에 생활폐기물 집하장 및 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수</p> <p>2. 시·군내 마을 인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및 처리장 이 있는 행정리 수</p> <p>* 답변 작성 시 부록 참조</p> <p>※ 점검 대상 생활 폐기물 집하장 및 처리장: 마을 내 비가림시설 및 재활용품, 음식물쓰러기 수거용기 등을 갖춘 거점수거시설</p>	<p>1. 시·군내 마을 인에 생활폐기물 집하장 및 처리장 ()개 읍·면 ()개 읍·면</p> <p>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및 처리장 ()개 행정리 ()개 행정리</p>	<p>()실·과</p> <p>성명 : ()실·과</p> <p>Tei : ()실·과</p>	<p>년 월</p>
			<p>1. 시·군내 마을 인에 생활폐기물 집하장 및 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수</p> <p>2. 시·군내 마을 인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및 처리장 이 있는 행정리 수</p> <p>* 답변 작성 시 부록 참조</p> <p>※ 점검 대상 생활 폐기물 집하장 및 처리장: 마을 내 비가림시설 및 재활용품, 음식물쓰러기 수거용기 등을 갖춘 거점수거시설</p>	<p>1. 시·군내 마을 인에 생활폐기물 집하장 및 처리장 ()개 읍·면 ()개 읍·면</p> <p>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및 처리장 ()개 행정리 ()개 행정리</p>	<p>()실·과</p> <p>성명 : ()실·과</p> <p>Tei : ()실·과</p>	<p>년 월</p>
장주 의견	생활 폐기물	<p>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기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주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도입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선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p>	<p>1. 시·군별 대중교통취약지역 대상 마을 수 및 중점영도</p> <p>프로젝트 사업 수혜 마을 수</p> <p>※ 대상 마을: 동촌형(동식품부)·도시형(국도부) 교통모델 사업 수혜 마을, 지자체 자체 공영·순환버스, 콜택시 수혜 마을</p> <p>※ ① = ② + ③ + ⑤</p> <p>※ (대상 마을 판단 기준) 버스형(노선운행)사업을 통해 운</p>	<p>1. 시·군내 마을 인에 생활폐기물 집하장 및 처리장 ()개 읍·면 ()개 읍·면</p> <p>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및 처리장 ()개 행정리 ()개 행정리</p>	<p>()실·과</p> <p>성명 : ()실·과</p> <p>Tei : ()실·과</p>	<p>년 월</p>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p>행하는 바스가 정차하는 정류장 1km이내의 마을, 택시 형 및 수요응답형 택시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호출할 수 있는 마을</p>	<p>⑤ 대중교통취약지역 중 사업 미운영 마을 수 ()개</p>		
	<p>방법 설명</p>	<p>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화로 탈러바전(가면장보 보호범 유형별)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화로 탈러바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p>	<p>시·군내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 수 (동지역 제외)</p> <p>* 답변 작성 시 부록 참조</p>	<p>(동지역 제외)</p> <p>시·군 행정구역 내 총 행정리()개 중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개</p>	<p>()월·과 성명 : Tel :</p>	<p>년 월</p>
<p>경제 활동</p>	<p>창업 및 취업 컨설팅</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p>	<p>시·군내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대면 프로그램 운영 횟수(연간)</p> <p>시·군내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온라인 활용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횟수(연간)</p>	<p>연 ()회</p> <p>연 ()회</p>	<p>()월·과 성명 : Tel :</p>	<p>년 월</p>

부록 2

2023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부처 간 협조자료 요청목록

* 작성요령 : 모든 자료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개정 최근의」 현황을 조사하여 회신

부문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세부기준	통계	구축 기관
1. 보건·의료 복지	영유아 보육·교육	치료를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보유기반과)
		응급의료	신고 접수 후 30분내 응급현장 도착	· 소방서(시·군)별 119 구급대 응급출동 소요시간 현황자료	소방청 (119구급과)
2. 교육 문화	체육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 체육진흥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경기장·체육관·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체육도장, 체육단련장, 간이운동장) 주소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3. 정주 여건	주택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용을 23% 이상으로 한다.	‘14년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 대비 농어촌에서 철거한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 비율 23% 이상	· (환경부) 농어촌 시군별 슬레이트 철거 실적 - 주택 철거·처리 분야 ‘14년 슬레이트 주택 물량 대비 ‘22년까지의 주택 철거처리 물량 비율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부분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세부기준	통계	구축 기관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68% 이상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보급률 · 시·군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현황 (도시가스 미보급 가구 중 설치 가구 수)	산업통상자원부 (기초산업과)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기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에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 도지역(시·군)별 본도(읍·면)현황 및 여객선 운항 현황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탄력순찰 실시 여부	·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장소 선정 현황 · 시·군별 탄력순찰 실시 현황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목표시간 내 도착 비율을 70% 이상으로 함	· 소방서(시·군)별 화재 출동 현황 자료 ① 출동거리와 소요 시간 ② 소방 출동 주소 자료(화재 발생 장소의 주소 및 출동한 소방서·119안전센터·119지역대·구조대의 주소정보)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부 록 3

2023년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 보건의료·복지 및 교육·문화 부문

구분		1. 보건의료·복지					2. 교육·문화				
시·도명	시·군명	진료 (분)	응급의료 (분)	영유아보육·교육 (분)	노인복지 (%)	초·중등교육 (분)	평생교육 (%)	문화 (분)	도서관 (분)	체육시설 (분)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30분~1시간	30분	20분	80%	10분	70%	40분	10분	30분	
부산광역시	기장군	6.9	10.9	4.9	25.1	5.5	100.0	17.4	3.3	8.9	
대구광역시	달성군	10.7	9.0	6.0	22.1	5.6	66.7	14.7	6.7	11.8	
인천광역시	강화군	22.8	11.0	9.9	15.6	7.1	100.0	23.2	7.7	16.7	
인천광역시	옹진군	49.4	-	6.1	21.5	6.4	100.0	71.3	21.6	26.4	
울산광역시	울주군	13.9	10.7	8.0	21.3	8.0	100.0	24.0	8.9	13.6	
세종특별자치시		13.2	10.0	7.0	17.4	5.9	20.0	20.4	6.6	9.5	
경기도	평택시	8.2	11.6	3.9	17.6	5.1	0.0	11.1	4.9	8.9	
경기도	남양주시	8.0	12.3	3.7	15.2	4.0	-	20.3	4.4	5.6	
경기도	용인시	10.3	12.0	4.2	14.0	4.6	100.0	16.8	5.2	10.5	
경기도	파주시	13.2	11.5	4.7	18.0	4.8	15.4	14.8	4.8	10.0	
경기도	이천시	13.0	12.4	4.8	15.5	5.8	100.0	23.8	5.6	6.8	
경기도	안성시	14.3	11.2	6.5	18.4	7.0	100.0	18.3	7.6	14.4	
경기도	김포시	9.0	11.1	4.7	12.8	4.3	83.3	17.2	4.7	8.1	
경기도	화성시	11.4	12.8	4.8	16.7	5.5	100.0	15.7	6.1	11.7	
경기도	광주시	11.6	12.6	4.8	12.3	6.2	83.3	17.3	5.7	12.1	
경기도	양주시	10.7	11.3	4.2	17.6	5.0	100.0	12.4	4.8	6.4	

구분		1. 보건의료·복지					2. 교육·문화				
시·도명	시·군명	진료 (분)	응급의료 (분)	영유아보육·교육 (분)	노인복지 (%)	초·중등교육 (분)	평생교육 (%)	문화 (분)	도서관 (분)	체육시설 (분)	
영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30분~1시간	30분	20분	80%	10분	70%	40분	10분	30분	
경기도	포천시	15.4	11.0	6.1	17.5	6.5	100.0	23.0	6.5	8.8	
경기도	여주시	17.6	12.9	6.9	18.5	6.4	77.8	19.4	7.3	12.4	
경기도	연천군	34.8	10.7	7.4	19.7	6.7	80.0	23.5	6.6	7.2	
경기도	가평군	31.6	13.9	9.2	16.6	9.0	100.0	31.6	13.0	16.6	
경기도	양평군	24.0	13.6	7.5	15.7	7.8	100.0	28.8	8.0	9.7	
강원도	춘천시	19.3	11.6	9.5	21.7	7.9	30.0	17.9	12.2	18.0	
강원도	원주시	16.6	10.9	9.9	22.2	6.6	100.0	22.6	7.6	15.4	
강원도	강릉시	16.3	10.2	10.1	23.4	8.5	75.0	21.2	11.7	15.9	
강원도	삼척시	32.3	11.0	10.9	24.2	9.5	87.5	33.9	14.1	28.5	
강원도	홍천군	34.9	13.7	16.4	17.0	10.0	80.0	40.4	16.8	16.5	
강원도	횡성군	38.9	12.8	16.6	18.4	8.6	100.0	33.1	9.3	15.4	
강원도	영월군	28.9	13.2	19.1	26.2	10.3	100.0	30.7	17.8	15.6	
강원도	평창군	65.8	13.8	10.8	18.5	9.2	100.0	48.7	9.8	16.2	
강원도	정선군	47.1	12.5	18.6	22.3	9.9	100.0	37.0	11.4	18.7	
강원도	철원군	21.2	11.6	7.4	20.0	7.6	54.5	16.9	9.1	9.4	
강원도	화천군	44.9	14.1	8.3	18.6	7.9	100.0	27.5	20.2	16.5	
강원도	양구군	18.4	11.3	11.0	21.4	7.4	80.0	18.6	8.4	15.2	
강원도	인제군	44.5	14.8	13.1	22.1	11.7	100.0	39.0	9.4	14.7	
강원도	고성군	34.3	11.1	7.6	24.3	7.5	83.3	14.3	7.6	17.2	
강원도	양양군	25.4	14.5	11.0	26.1	8.8	100.0	19.9	14.6	16.6	
충청북도	충주시	22.4	10.7	9.1	17.1	7.9	38.5	25.4	10.4	20.8	
충청북도	제천시	28.1	11.3	13.7	23.2	8.1	100.0	28.0	11.6	20.8	
충청북도	청주시	13.1	11.2	7.7	18.6	6.2	46.2	17.9	6.4	11.6	
충청북도	보은군	19.8	12.6	12.4	33.6	9.4	100.0	20.4	10.7	20.4	
충청북도	옥천군	21.5	11.4	10.4	26.8	8.4	100.0	22.1	9.1	22.3	
충청북도	영동군	31.7	11.8	13.3	27.8	10.5	100.0	25.0	12.9	25.3	

구분		1. 보건의료·복지					2. 교육·문화				
시·도명	시·군명	진료 (분)	응급의료 (분)	영유아보육·교육 (분)	노인복지 (%)	초·중등교육 (분)	평생교육 (%)	문화 (분)	도서관 (분)	체육시설 (분)	
영아원서비스기준 목표치		30분~1시간	30분	20분	80%	10분	70%	40분	10분	30분	
충청남도	진천군	15.3	10.6	7.4	26.5	8.0	100.0	16.8	6.9	11.1	
충청남도	괴산군	27.1	14.7	12.3	21.4	9.1	100.0	22.4	10.0	17.3	
충청남도	음성군	14.9	10.3	6.3	23.4	6.7	100.0	26.8	6.3	9.9	
충청남도	단양군	40.9	13.2	15.7	21.3	11.0	100.0	27.8	22.4	23.6	
충청북도	증평군	7.9	11.2	4.5	24.5	5.4	100.0	7.2	5.0	7.2	
충청남도	천안시	13.8	10.0	5.6	17.1	6.3	100.0	13.6	5.8	12.2	
충청남도	공주시	24.1	11.2	9.9	26.4	9.0	100.0	25.2	10.1	23.0	
충청남도	보령시	20.8	10.1	10.0	24.4	7.3	100.0	23.4	7.4	21.7	
충청남도	아산시	13.7	10.2	5.5	19.7	5.3	100.0	17.1	5.2	14.0	
충청남도	서산시	18.7	10.7	8.5	23.9	6.2	100.0	23.1	7.6	22.5	
충청남도	논산시	17.5	10.5	7.3	23.7	6.2	100.0	19.2	8.0	17.0	
충청남도	계룡시	5.6	7.9	2.7	18.3	3.7	100.0	6.8	3.6	7.0	
충청남도	당진시	17.1	10.7	6.5	21.3	6.4	100.0	22.6	7.4	11.2	
충청남도	금산군	17.6	11.7	7.9	27.2	7.5	0.0	19.1	7.5	6.7	
충청남도	부여군	22.1	10.2	10.5	30.8	6.6	100.0	23.8	9.6	17.1	
충청남도	서천군	18.0	10.0	9.5	29.8	6.7	100.0	19.1	6.5	13.6	
충청남도	청양군	28.1	11.5	8.3	26.7	8.3	100.0	19.0	7.4	17.0	
충청남도	홍성군	18.0	10.1	8.7	25.9	6.7	90.9	18.4	12.1	20.5	
충청남도	예산군	18.1	11.0	9.3	23.0	6.2	100.0	17.3	8.0	13.1	
충청남도	태안군	43.1	12.6	12.0	18.0	7.6	100.0	32.7	15.8	19.3	
전라북도	군산시	13.1	10.3	6.6	25.8	4.8	100.0	17.4	5.8	13.6	
전라북도	익산시	14.6	10.7	6.2	23.0	5.0	100.0	19.8	7.2	8.0	
전라북도	정읍시	19.0	11.2	9.5	29.9	6.0	66.7	21.9	9.8	12.5	
전라북도	남원시	19.9	12.3	8.5	32.8	6.3	100.0	20.8	7.3	16.7	
전라북도	김제시	16.5	11.8	8.2	25.9	6.5	100.0	18.1	7.8	15.2	
전라북도	완주군	20.6	12.0	7.3	32.0	6.7	100.0	18.5	8.5	16.7	

구분		1. 보건의료·복지					2. 교육·문화				
시·도명	시·군명	진료 (분)	응급의료 (분)	영유아보육·교육 (분)	노인복지 (%)	초·중등교육 (분)	평생교육 (%)	문화 (분)	도서관 (분)	체육시설 (분)	
영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30분~1시간	30분	20분	80%	10분	70%	40분	10분	30분	
전라북도	진안군	24.9	14.0	12.9	24.0	8.5	100.0	25.0	9.0	10.7	
전라북도	무주군	42.2	13.6	10.0	40.1	8.4	100.0	31.2	12.6	18.6	
전라북도	장수군	35.8	12.9	11.9	25.1	7.8	28.6	24.0	7.1	8.5	
전라북도	임실군	34.8	14.2	18.6	39.1	7.0	100.0	25.2	9.8	18.0	
전라북도	순창군	27.6	12.4	6.9	29.2	7.2	100.0	20.7	7.2	7.5	
전라북도	고창군	22.3	12.5	10.7	33.7	5.8	64.3	24.2	8.0	8.2	
전라북도	부안군	22.3	12.3	8.7	28.8	5.7	100.0	22.1	7.9	19.7	
전라남도	여수시	16.7	11.3	8.8	15.9	5.6	57.1	25.8	7.8	19.5	
전라남도	순천시	23.4	12.0	9.7	20.9	7.6	72.7	26.4	6.7	14.6	
전라남도	나주시	17.0	11.1	7.5	30.4	5.8	100.0	20.5	7.0	13.2	
전라남도	광양시	21.3	11.1	7.4	22.9	7.3	100.0	17.8	7.2	13.7	
전라남도	담양군	17.4	13.0	9.1	29.3	7.3	100.0	16.7	8.3	14.2	
전라남도	곡성군	31.3	13.0	10.7	36.3	9.2	100.0	25.9	7.2	22.9	
전라남도	구례군	34.7	13.8	10.4	31.2	7.0	100.0	45.2	13.9	17.9	
전라남도	고흥군	27.8	16.3	12.5	29.7	7.5	18.8	33.1	12.0	18.9	
전라남도	보성군	31.2	14.2	11.4	35.4	7.9	58.3	27.1	15.9	16.3	
전라남도	화순군	24.1	14.5	13.0	33.8	7.4	100.0	28.1	12.4	24.1	
전라남도	장흥군	27.9	12.1	14.1	55.5	7.4	100.0	28.0	22.5	24.3	
전라남도	강진군	20.2	12.5	11.0	40.4	6.3	100.0	20.4	13.8	16.5	
전라남도	해남군	28.5	15.9	11.8	29.4	8.7	100.0	30.2	19.7	25.0	
전라남도	영암군	28.7	12.2	8.7	36.5	5.8	27.3	20.4	6.1	15.1	
전라남도	무안군	20.3	11.2	10.8	27.7	6.5	100.0	21.6	8.4	16.5	
전라남도	함평군	20.8	12.2	11.6	37.2	7.3	100.0	20.6	7.7	21.0	
전라남도	영광군	17.0	11.6	8.4	40.1	7.1	81.8	19.6	13.1	15.7	
전라남도	정성군	21.9	13.2	11.0	30.4	7.3	72.7	18.9	7.9	16.4	
전라남도	원도군	27.3	19.4	7.9	33.4	6.2	100.0	26.7	11.4	12.1	

구분		1. 보건의료·복지					2. 교육·문화				
시·도명	시·군명	진료 (분)	응급의료 (분)	영유아보육·교육 (분)	노인복지 (%)	초·중등교육 (분)	평생교육 (%)	문화 (분)	도서관 (분)	체육시설 (분)	
영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30분~1시간	30분	20분	80%	10분	70%	40분	10분	30분	
전라남도	진도군	38.4	19.6	12.3	38.8	7.7	100.0	19.8	10.9	20.8	
전라남도	신안군	38.8	19.9	13.2	25.4	8.2	100.0	52.4	23.4	32.7	
경상북도	포항시	22.8	10.0	9.4	18.9	6.1	100.0	29.3	7.7	22.9	
경상북도	경주시	22.6	11.2	8.5	24.3	8.4	33.3	27.1	10.4	16.4	
경상북도	김천시	22.8	12.2	10.7	23.1	9.8	86.7	24.5	18.6	26.5	
경상북도	인동시	24.9	11.7	10.3	23.3	12.0	100.0	28.6	13.6	24.7	
경상북도	구미시	13.2	10.1	6.2	29.8	5.7	100.0	16.4	8.6	11.9	
경상북도	영주시	16.7	10.6	8.1	20.9	8.2	0.0	19.3	10.8	15.2	
경상북도	영천시	22.5	12.5	9.8	26.0	9.0	100.0	24.2	14.1	21.7	
경상북도	상주시	24.7	12.8	10.2	27.2	8.0	66.7	26.9	12.5	26.8	
경상북도	문경시	30.9	11.4	9.8	29.1	8.6	100.0	31.2	10.3	23.6	
경상북도	경산시	10.9	11.3	5.7	21.7	5.7	100.0	18.4	6.6	12.6	
경상북도	군위군	31.7	-	12.0	25.5	10.7	12.5	30.3	23.6	19.6	
경상북도	의성군	22.8	13.9	11.6	28.5	9.7	100.0	30.6	12.8	19.2	
경상북도	청송군	66.5	15.0	13.4	26.6	9.6	100.0	61.5	15.4	26.2	
경상북도	영양군	60.9	-	13.3	26.5	12.8	83.3	26.3	15.8	23.8	
경상북도	영덕군	24.7	13.1	12.7	29.2	10.4	11.1	20.0	15.7	18.3	
경상북도	청도군	29.2	13.3	10.3	32.2	9.1	100.0	25.5	16.1	14.7	
경상북도	고령군	18.7	12.6	8.8	23.9	7.5	100.0	17.0	10.5	14.2	
경상북도	상주군	23.7	13.1	9.3	23.3	7.8	100.0	18.9	14.5	17.1	
경상북도	칠곡군	12.7	10.8	7.0	20.4	6.9	100.0	16.8	8.5	16.3	
경상북도	예천군	20.1	12.1	9.6	25.1	8.2	66.7	21.6	10.4	19.4	
경상북도	봉화군	40.5	15.5	10.9	21.2	9.5	80.0	32.9	16.5	19.8	
경상북도	울진군	30.2	11.9	9.6	30.9	9.0	50.0	32.0	11.1	28.1	
경상북도	울릉군	-	-	16.5	17.5	14.1	100.0	25.3	28.2	18.2	
경상남도	창원시	10.3	8.1	4.2	15.6	4.8	100.0	21.5	6.3	10.0	

구분		1. 보건의료·복지					2. 교육·문화				
시·도명	시·군명	진료 (분)	응급의료 (분)	영유아보육·교육 (분)	노인복지 (%)	초·중등교육 (분)	평생교육 (%)	문화 (분)	도서관 (분)	체육시설 (분)	
영아원서비스기준 목표치		30분~1시간	30분	20분	80%	10분	70%	40분	10분	30분	
경상남도	진주시	18.0	9.5	7.1	20.9	7.1	100.0	22.9	9.4	15.4	
경상남도	통영시	13.6	13.2	6.7	19.1	5.5	100.0	15.6	5.0	9.4	
경상남도	사천시	18.2	10.1	7.9	27.7	6.9	100.0	26.6	7.6	16.1	
경상남도	김해시	10.1	9.9	5.8	16.8	5.8	85.7	17.4	5.2	9.0	
경상남도	밀양시	20.5	11.4	12.8	23.8	7.9	100.0	24.9	8.7	22.4	
경상남도	거제시	17.9	11.2	6.7	23.5	5.4	100.0	30.0	7.9	11.6	
경상남도	양산시	12.2	10.1	6.1	15.7	5.7	100.0	21.0	6.7	14.6	
경상남도	의령군	32.9	12.1	10.3	25.6	8.6	100.0	24.9	12.3	16.7	
경상남도	함안군	15.7	11.2	6.4	29.4	6.4	40.0	18.1	8.9	10.7	
경상남도	창녕군	20.2	10.8	9.2	28.2	8.0	100.0	21.7	9.4	13.7	
경상남도	고성군	20.1	12.7	8.7	36.8	7.7	100.0	21.8	10.9	12.8	
경상남도	남해군	21.7	13.7	10.0	36.6	7.0	100.0	22.3	11.0	14.6	
경상남도	하동군	43.1	13.0	10.8	31.7	7.6	100.0	32.3	11.1	22.5	
경상남도	산청군	49.1	14.1	11.2	57.9	9.9	100.0	30.5	10.2	12.0	
경상남도	함양군	31.0	12.5	9.2	27.6	8.7	100.0	24.8	8.9	15.2	
경상남도	거창군	22.3	12.6	10.9	30.9	9.6	100.0	25.2	14.4	18.3	
경상남도	합천군	34.1	14.2	13.1	35.0	8.9	100.0	29.2	11.3	16.6	
제주도	제주시	21.1	10.7	6.5		5.5	100.0	34.5	5.5	10.0	
제주도	서귀포시	27.7	10.8	5.6	18.7	5.3	100.0	37.3	5.0	7.7	

주: 노인복지 항목은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6.5% 추정)*를 대상으로 함. 각 시·군의 점검값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수'의 비율로서, 최소 6.5% 이상의 노인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봄.

* [산세] 6.5%=16.6%(재가노인 중 IADL제한) × 70%(가조연금수급비율) × 55.9%(독거 및 부부동거가구 비율)

□ 정주여건 및 경제활동 부문

구분		3. 정주여건										4. 경제활동
시·도명	시·군명	주택 (%)	상수도 (%)	하수도 (%)	난방 (%)	대중교통 (%)	생활패기물 (%)		방법설비 (%)	경찰순찰 (%)	소방출동 (%)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
							영능	생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23%	85%	76%	68%	100%	100%	100%	60%	100%	70%	86%
부산광역시	기장군	-	82.1	96.5	89.3	87.1	20.0	2.7	98.4	100.0	57.8	1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	100.0	92.1	91.0	85.3	77.8	10.4	69.8	99.2	72.5	1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	71.2	37.2	77.8	92.7	84.6	48.9	83.0	93.6	47.3	1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	38.1	61.3	-	11.5	100.0	24.4	100.0	99.6	31.3	1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	86.7	97.2	98.5	84.7	0.0	3.2	75.5	98.3	65.3	100.0
세종특별자치시		-	97.4	-	113.5	90.6	100.0	9.8	100.0	98.4	59.4	100.0
경기도	평택시	-	100.0	-	99.3	89.0	66.7	91.4	27.9	98.0	38.5	100.0
경기도	남양주시	-	87.5	-	105.5	100.0	11.1	0.0	96.4	100.0	35.5	100.0
경기도	용인시	-	89.6	-	78.8	98.6	71.4	12.9	21.1	100.0	35.3	100.0
경기도	파주시	-	96.0	-	78.5	80.2	30.8	3.2	98.0	97.2	47.0	100.0
경기도	이천시	-	94.2	-	81.4	95.7	100.0	36.3	100.0	99.8	49.2	100.0
경기도	안성시	-	84.4	-	99.0	86.1	66.7	17.1	99.1	100.0	50.6	100.0
경기도	김포시	-	96.6	-	92.6	91.2	100.0	13.2	94.3	98.5	44.6	100.0
경기도	화성시	-	100.0	-	87.9	94.1	84.6	3.4	100.0	98.4	39.7	100.0
경기도	광주시	-	66.5	-	78.1	96.8	0.0	51.1	79.1	94.0	30.3	100.0
경기도	양주시	-	97.4	-	82.2	100.0	20.0	28.6	89.5	100.0	35.9	100.0
경기도	포천시	-	88.7	-	81.5	96.3	50.0	59.2	99.2	100.0	46.4	100.0
경기도	여주시	-	79.0	-	59.1	94.3	100.0	24.7	94.9	97.4	42.9	100.0
경기도	연천군	-	98.2	72.0	79.6	60.5	60.0	0.0	86.7	98.5	36.3	100.0
경기도	기평군	-	45.4	85.0	66.9	98.4	33.3	60.2	100.0	100.0	65.0	100.0
경기도	양평군	-	76.1	79.2	63.3	94.5	66.7	16.9	98.6	99.6	49.2	100.0

구분		3. 정주여건										4. 경제활동
시·도명	시·군명	주택 (%)	상수도 (%)	하수도 (%)	난방 (%)	대중교통 (%)	생활폐기물 (%)		방법설비 (%)	경찰순찰 (%)	소방활동 (%)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
							영농	생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23%	85%	76%	68%	100%	100%	100%	60%	100%	70%	86%
강원도	춘천시	-	92.1	-	1.3	85.9	90.0	93.3	31.0	94.1	52.9	100.0
강원도	원주시	-	83.6	-	81.8	98.3	100.0	9.0	28.6	95.0	56.2	100.0
강원도	강릉시	-	78.0	-	21.8	96.9	100.0	100.0	86.2	93.7	58.7	100.0
강원도	삼척시	-	55.0	-	23.9	83.2	87.5	100.0	34.2	97.8	41.2	0.0
강원도	홍천군	-	65.0	78.8	81.3	90.5	100.0	16.6	90.5	99.2	59.1	100.0
강원도	횡성군	-	83.8	70.9	56.2	90.9	100.0	91.5	72.2	97.8	66.0	100.0
강원도	영월군	-	57.4	79.4	53.2	87.7	100.0	42.9	98.4	95.3	60.3	100.0
강원도	평창군	-	83.0	82.4	0.0	69.7	100.0	20.4	27.2	100.0	66.0	100.0
강원도	정선군	-	67.0	90.6	14.6	93.2	88.9	73.0	80.5	96.6	60.6	100.0
강원도	철원군	-	83.1	83.5	0.0	41.2	63.6	8.5	94.9	100.0	68.1	0.0
강원도	화천군	-	56.3	73.2	0.0	85.0	100.0	97.7	95.3	95.7	56.5	100.0
강원도	양구군	-	78.3	91.5	0.0	66.7	100.0	47.1	95.3	100.0	42.6	100.0
강원도	인제군	-	85.2	84.0	0.0	83.8	100.0	14.1	100.0	100.0	59.3	100.0
강원도	고성군	-	94.3	88.9	10.2	63.6	100.0	49.2	50.0	100.0	68.8	100.0
강원도	양양군	-	88.1	88.2	42.7	60.8	100.0	73.4	75.0	95.3	62.2	0.0
충청북도	충주시	-	78.5	-	27.5	91.2	100.0	68.6	33.7	96.5	51.1	100.0
충청북도	제천시	-	77.8	-	25.7	76.1	100.0	15.7	46.5	99.3	52.5	100.0
충청북도	청주시	-	80.0	-	98.1	62.1	84.6	7.7	89.0	98.4	48.1	100.0
충청북도	보은군	-	27.1	78.1	33.4	81.0	100.0	17.3	68.3	98.6	71.0	100.0
충청북도	옥천군	-	76.9	90.9	56.7	91.2	100.0	20.7	100.0	95.1	61.3	100.0
충청북도	영동군	-	74.3	75.3	49.9	93.9	100.0	81.9	100.0	98.2	68.7	100.0
충청북도	진천군	-	90.5	86.7	66.4	96.4	100.0	8.6	82.8	96.0	51.1	100.0
충청북도	괴산군	-	51.4	50.8	45.8	96.0	100.0	0.3	92.7	97.9	59.4	100.0
충청북도	음성군	-	90.2	63.4	65.8	96.5	100.0	3.8	94.8	93.7	56.5	100.0
충청북도	단양군	-	55.8	77.7	32.2	88.0	100.0	13.2	75.7	98.9	47.4	100.0
충청북도	증평군	-	99.7	97.5	88.0	92.6	100.0	78.6	99.1	97.9	83.3	100.0

구분		3. 정주여건										4. 경제활동
시·도명	시·군명	주택 (%)	상수도 (%)	하수도 (%)	난방 (%)	대중교통 (%)	생활폐기물 (%)		방법설비 (%)	경찰순찰 (%)	소방활동 (%)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
							영능	생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23%	85%	76%	68%	100%	100%	100%	60%	100%	70%	86%
충청남도	천안시	-	60.6	-	82.5	95.9	91.7	5.8	31.7	100.0	51.2	100.0
충청남도	공주시	-	76.7	-	0.0	92.5	90.0	4.4	66.0	100.0	75.8	100.0
충청남도	보령시	-	73.8	-	0.0	94.1	81.8	12.8	95.3	97.3	72.3	100.0
충청남도	아산시	-	94.9	-	84.5	97.9	54.5	30.2	85.8	93.2	65.3	100.0
충청남도	서산시	-	97.2	-	96.5	94.4	90.0	18.9	97.1	92.4	54.4	100.0
충청남도	논산시	-	69.2	-	18.5	89.1	53.8	10.1	58.6	92.4	57.6	100.0
충청남도	계룡시	-	98.8	-	-	85.7	0.0	0.0	94.9	92.4	42.1	0.0
충청남도	당진시	-	88.3	-	106.7	100.0	90.9	27.0	74.3	94.5	69.0	100.0
충청남도	금산군	-	74.0	81.0	77.5	98.1	100.0	100.0	86.5	100.0	69.2	0.0
충청남도	부여군	-	84.1	68.7	55.6	93.2	93.8	59.5	45.1	95.6	79.2	100.0
충청남도	서천군	-	80.6	61.7	68.9	88.4	92.3	27.6	42.5	100.0	75.0	100.0
충청남도	청양군	-	36.9	55.9	42.4	97.4	80.0	31.1	100.0	93.2	51.9	100.0
충청남도	홍성군	-	78.0	73.5	70.8	92.9	72.7	0.3	100.0	96.4	63.7	100.0
충청남도	예산군	-	57.6	63.6	72.3	93.8	75.0	0.0	87.0	94.1	61.8	100.0
충청남도	태안군	-	95.6	59.5	59.5	96.9	100.0	23.8	66.7	98.7	66.7	100.0
전라북도	군산시	-	91.6	-	3.6	85.5	36.4	4.7	72.1	98.7	48.0	100.0
전라북도	익산시	-	98.3	-	47.1	95.6	46.7	2.6	100.0	98.9	53.9	100.0
전라북도	정읍시	-	96.4	-	0.0	90.8	73.3	4.1	88.1	100.0	73.5	100.0
전라북도	남원시	-	87.0	-	0.0	99.4	100.0	23.6	100.0	95.8	67.9	100.0
전라북도	김제시	-	99.9	-	0.0	99.2	73.3	2.7	81.6	99.4	67.9	100.0
전라북도	완주군	-	78.3	85.2	78.4	75.5	38.5	18.8	99.6	98.2	79.7	100.0
전라북도	진안군	-	85.4	86.2	46.7	96.1	100.0	55.3	100.0	100.0	80.4	100.0
전라북도	무주군	-	79.3	79.4	62.1	100.0	100.0	27.8	100.0	100.0	79.1	100.0
전라북도	정수군	-	90.6	85.0	0.0	91.8	100.0	12.4	64.1	99.7	63.9	100.0
전라북도	임실군	-	95.3	68.9	66.5	90.8	100.0	17.1	100.0	97.7	60.6	100.0

구분		3. 정주여건										4. 경제활동
시·도명	시·군명	주택 (%)	상수도 (%)	하수도 (%)	난방 (%)	대중교통 (%)	생활폐기물 (%)		방법설비 (%)	경찰순찰 (%)	소방활동 (%)	창업·취업 건설학교육 (%)
							영농	생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23%	85%	76%	68%	100%	100%	100%	60%	100%	70%	86%
전라북도	순창군	-	77.8	65.2	76.4	89.3	100.0	27.1	100.0	98.5	68.9	100.0
전라북도	고창군	-	99.8	77.6	81.6	94.2	100.0	21.2	99.5	97.5	50.0	100.0
전라북도	부안군	-	99.7	85.2	74.2	91.9	100.0	4.2	72.8	99.4	67.0	100.0
전라남도	여수시	-	90.3	-	0.0	81.0	57.1	12.1	52.1	97.4	65.9	100.0
전라남도	순천시	-	93.9	-	0.0	90.8	90.9	16.0	27.8	97.6	70.5	100.0
전라남도	나주시	-	59.0	-	66.7	94.8	61.5	1.5	78.9	99.5	63.7	100.0
전라남도	광양시	-	78.1	-	90.5	89.8	71.4	17.8	62.0	98.6	55.6	100.0
전라남도	담양군	-	79.2	77.9	69.8	94.3	50.0	6.0	64.5	97.9	56.7	100.0
전라남도	곡성군	-	86.4	83.1	36.8	86.4	90.9	0.4	92.3	98.7	64.8	100.0
전라남도	구례군	-	85.7	95.6	47.5	94.2	75.0	0.0	100.0	98.7	59.2	0.0
전라남도	고흥군	-	71.1	67.1	30.9	96.2	93.8	0.0	25.4	99.4	55.2	100.0
전라남도	보성군	-	43.6	67.2	15.9	97.6	83.3	3.8	100.0	100.0	67.6	100.0
전라남도	회선군	-	81.0	85.5	92.2	90.4	100.0	2.0	52.0	100.0	66.3	100.0
전라남도	장흥군	-	91.5	73.8	33.9	93.4	80.0	8.5	66.5	99.7	44.4	0.0
전라남도	강진군	-	65.7	71.7	53.5	80.4	100.0	3.8	100.0	99.9	62.2	100.0
전라남도	해남군	-	73.9	59.7	80.9	93.8	100.0	8.4	100.0	99.2	56.5	100.0
전라남도	영암군	-	89.0	78.3	108.2	91.7	54.5	10.2	88.3	96.0	48.6	100.0
전라남도	무안군	-	99.8	73.8	65.0	97.1	100.0	1.4	58.1	96.5	68.8	0.0
전라남도	함평군	-	94.2	85.0	45.8	98.1	100.0	5.1	29.7	98.5	76.6	100.0
전라남도	영광군	-	94.0	66.3	44.5	89.8	90.9	96.2	91.4	96.2	58.6	100.0
전라남도	장성군	-	92.0	68.1	71.1	88.6	9.1	16.4	89.0	99.9	79.0	100.0
전라남도	완도군	-	94.7	68.0	0.0	42.7	83.3	4.9	56.5	98.2	64.9	0.0
전라남도	진도군	-	98.1	70.1	0.0	70.4	100.0	10.3	99.2	98.0	63.6	100.0
전라남도	신안군	-	86.8	40.2	0.0	46.2	92.9	4.4	25.1	100.0	67.4	100.0

구분		3. 정주여건										4. 경제활동
시·도명	시·군명	주택 (%)	상수도 (%)	하수도 (%)	난방 (%)	대중교통 (%)	생활폐기물 (%)		방법설비 (%)	경찰순찰 (%)	소방활동 (%)	창업·취업 건설학교육 (%)
							영농	생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23%	85%	76%	68%	100%	100%	100%	60%	100%	70%	86%
경상북도	포항시	-	77.7	-	85.7	92.9	28.6	4.4	38.4	97.5	54.2	100.0
경상북도	경주시	-	84.5	-	68.2	95.1	83.3	49.7	96.2	95.1	56.1	100.0
경상북도	김천시	-	58.1	-	0.0	94.0	93.3	21.9	96.0	96.3	73.7	100.0
경상북도	안동시	-	86.2	-	13.1	97.1	100.0	61.6	77.4	99.2	70.1	100.0
경상북도	구미시	-	96.7	-	78.7	90.8	100.0	12.4	45.5	100.0	50.0	100.0
경상북도	영주시	-	58.9	-	41.9	92.6	100.0	66.5	100.0	95.6	69.3	100.0
경상북도	영천시	-	92.4	-	59.8	95.5	100.0	10.9	91.3	98.7	59.6	100.0
경상북도	상주시	-	48.0	-	15.3	95.0	88.9	100.0	46.6	100.0	65.3	100.0
경상북도	문경시	-	85.4	-	0.0	91.6	100.0	87.2	95.0	100.0	65.1	0.0
경상북도	경산시	-	94.6	-	100.0	89.8	75.0	9.1	97.9	99.3	59.7	100.0
경상북도	군위군	-	89.2	50.3	30.0	95.7	75.0	7.2	93.3	95.6	95.2	100.0
경상북도	의성군	-	95.5	51.4	37.2	95.1	94.4	15.8	44.5	100.0	83.3	100.0
경상북도	청송군	-	72.1	53.0	0.0	96.5	100.0	69.9	100.0	98.7	70.2	100.0
경상북도	영안군	-	88.6	65.2	0.0	93.2	100.0	59.1	60.0	96.0	60.0	100.0
경상북도	영덕군	-	95.8	77.9	34.6	90.7	100.0	27.5	65.2	96.1	58.6	0.0
경상북도	청도군	-	84.9	64.0	31.0	89.0	77.8	31.1	74.1	100.0	71.0	100.0
경상북도	고령군	-	98.9	63.9	60.2	87.5	100.0	100.0	60.8	97.9	74.2	100.0
경상북도	성주군	-	78.6	61.5	35.8	91.9	50.0	100.0	82.0	99.2	64.0	100.0
경상북도	칠곡군	-	90.3	77.4	98.6	91.8	12.5	12.5	36.6	93.1	62.1	100.0
경상북도	예천군	-	89.7	67.6	65.9	87.9	100.0	100.0	100.0	93.1	69.1	100.0
경상북도	봉화군	-	59.0	74.6	40.0	94.4	100.0	100.0	88.5	97.5	61.0	0.0
경상북도	울진군	-	77.6	73.9	43.9	95.0	90.0	97.4	-	100.0	49.4	0.0
경상북도	울릉군	-	92.1	8.9	0.0	90.0	0.0	12.0	100.0	93.4	33.3	0.0

구분		3. 정주여건										4. 경제활동	
시·도명	시·군명	주택 (%)	상수도 (%)	하수도 (%)	난방 (%)	대중교통 (%)	생활패기물 (%)			방법설비 (%)	경찰순찰 (%)	소방출동 (%)	창업·취업 건설및교육 (%)
							영농	생활	생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		23%	85%	76%	68%	100%	100%	100%	100%	60%	100%	70%	86%
경상남도	창원시	-	91.9	-	85.8	92.9	75.0	6.6	26.8	100.0	51.0	100.0	
경상남도	진주시	-	100.0	-	38.9	93.5	50.0	5.7	30.7	100.0	77.8	100.0	
경상남도	통영시	-	97.8	-	0.0	54.0	28.6	86.3	100.0	98.6	68.9	100.0	
경상남도	사천시	-	98.8	-	100.5	80.0	0.0	0.8	34.3	99.8	68.5	0.0	
경상남도	김해시	-	88.7	-	96.9	98.5	71.4	0.0	69.6	97.8	63.3	100.0	
경상남도	밀양시	-	69.9	-	0.0	89.9	90.9	14.3	100.0	100.0	77.5	100.0	
경상남도	거제시	-	97.7	-	-	97.3	88.9	0.0	58.0	96.9	85.9	100.0	
경상남도	양산시	-	92.6	-	85.9	86.5	60.0	6.5	21.9	100.0	59.8	100.0	
경상남도	의령군	-	68.2	67.5	66.1	91.4	84.6	29.3	100.0	100.0	87.3	100.0	
경상남도	합안군	-	96.5	69.8	70.0	100.0	80.0	96.9	81.6	100.0	61.9	100.0	
경상남도	창녕군	-	99.7	78.5	31.5	90.6	100.0	18.6	33.7	96.3	81.8	0.0	
경상남도	고성군	-	67.1	74.3	54.7	96.6	64.3	84.9	84.9	100.0	80.5	100.0	
경상남도	남해군	-	80.7	85.2	0.0	97.5	100.0	0.5	74.2	97.2	74.5	100.0	
경상남도	하동군	-	49.7	85.5	65.8	90.7	76.9	11.6	100.0	97.6	80.1	100.0	
경상남도	신창군	-	48.9	65.0	39.4	65.5	81.8	38.2	99.0	100.0	91.4	0.0	
경상남도	합안군	-	43.9	78.9	60.2	88.3	100.0	67.2	97.3	98.6	83.0	100.0	
경상남도	거창군	-	37.5	83.2	76.7	97.9	100.0	86.9	100.0	96.4	70.2	100.0	
경상남도	합천군	-	48.0	71.9	50.0	83.9	100.0	23.1	46.9	98.7	80.2	0.0	
제주도	제주시	-	-	-	0.0	91.8	71.4	100.0	94.8	98.6	57.7	100.0	
제주도	서귀포시	-	30.3	-	0.0	98.0	100.0	100.0	94.8	98.8	58.2	100.0	

주 1) 주택 항목은 데이터(환경부 혈조사표)상의 한계로 인해 시·군별 이행실태 측정이 불가함.
 2) 하수도 항목은 농어촌서비스기준상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군에 대하여 점검함.
 3) 대중교통 항목은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군 내 범정리 비율임.
 4) 창업·취업건설및교육 항목은 시·군에서 창업·취업 관련 전문적 건설팀·교육서비스를 연 1회 이상 운영한 경우 100%, 그렇지 않은 경우 0%로 측정함.

참고문헌

- 김광선, 송미령, 김용렬, 권인혜, 윤병석. (2010).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위원회. (2020). 2020~2024 제 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5개년 기본계획.
- 농림어업총조사. (2015). 지역조사.
- 송미령, 김광선, 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박시현, 성주인, 김광선, 권인혜. (2009).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